

제1925호 고양시보

2022년 11월 8일(화)

차 례

조 례

고양시 조례 제2620호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고양시 조례 제2621호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5
고양시 조례 제2622호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7
고양시 조례 제2623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고양시 조례 제2624호	고양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고양시 조례 제2625호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46
고양시 조례 제2626호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49
고양시 조례 제2627호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55

규 칙

고양시 규칙 제1148호	고양시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9
고양시 규칙 제1149호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85
고양시 규칙 제1150호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107
고양시 규칙 제1151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25

훈 령

고양시 훈령 제394호	고양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147
--------------	-----------------	-----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22-351호	고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가로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57
-------------------	--	-----

공 고

고양시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과 공고 제2022-259호	2022년 10월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158
---------------------------------	-------------------------	-----

제267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2년 11월 8일

고양시 조례 제2620호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제5조의2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감사관
입 안 자	과장 성명	감사관 원 송 희
	팀장 성명	조사2팀장 강 기 범
	담당자 성명·전화	김 현 우 031-8075-2148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u>제2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u> (생략) <u>제15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자가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u> <u><신설></u> <u>② (생략)</u>	<u>제5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u> (현행 제20조와 같음) <u>제15조(책임의 감면 등) ①</u> 시장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u>②</u>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징계뿐 아니라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처분권자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위치를 변경함(제5조의2).
- 나. 신고자에 대한 징계 외에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처분권자가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책임감면 범위 확대함(제15조제1항).
- 다. 징계 또는 행정처분권자에게 신고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책임감면 요구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권익위로 통보하도록 규정함(제15조제2항 신설).

제267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2년 11월 8일

고양시 조례 제2621호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고양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해야 한다.

④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고양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⑤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고양시의회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이행해야 하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고양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

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2년마다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2년마다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해야 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점검 결과
2. 시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3.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②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고양시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특정성별”을 “특정 성별”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22조를 제18조로 하며, 제19조제1항(중전의 제18조제1항) 중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8조제2항) 중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에 따른다”를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로 정한다”

다” 로 하며, 제20조제1항(중전의 제19조제1항) 중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으로, “지속가능성 보고서” 를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지속가능발전법」” 을 각각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으로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이행계획” 을 각각 “추진계획” 으로 한다.

소관부서		기획정책관
입안자	과장 성명	기획정책관 최현석
	팀장 성명	정책팀장 백현숙
	담당자 성명·전화	송현수 031-8075-206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고양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원칙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고양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 고양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해야 한다. ④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고양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⑤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

2.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④ 시장은 지속가능성보고서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정비해야 한다.

제5조(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추진해야 한다.

② 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이행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

2. 이행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한 경우에는 고양시의회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이행해야 하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고양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u>〈신 설〉</u> <u>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u> ①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	⑦ 제6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u>제5조의2(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u>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u>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u>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	---

하고 고양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이를 공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2년마다 개발·보완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따라 2년마다 고양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 및 점검해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성 보고서)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고양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2년마다 작성·공표해야 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점검 결과
2. 시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 방향
3.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제8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고양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이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완,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2년마다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2년마다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해야 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점검 결과
 2. 시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 방향
 3.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 ②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고양시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청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 4. (생략) 제22조(운영세칙) (생략) 제18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시민 의견수렴,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점검, <u>지속가능성 보고서</u>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u>지속가능발전협의회</u>(이하 “<u>협의회</u>”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설치·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u>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u>」에 따른다. 제19조(조사·연구 의뢰)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점검, <u>지속가능성 보고서</u> 작성 등을 위	한 사항 6. <u>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u> 7.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특정 성별-----. 1. ~ 4. (현행과 같음) 제18조(운영세칙) (현행 제22조와 같음) 제19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① -----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② -----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조사·연구 의뢰) ①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	--

하여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생 략) <u>제20조</u>(교육·홍보 등) (생 략) <u>제21조</u>(국내외 협력 등) (생 략)	----- ----- ----- -----. ② (현행과 같음) <u>제21조</u>(교육·홍보 등) (현행 제20조와 같음) <u>제22조</u>(국내외 협력 등) (현행 제21조와 같음)
--	--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사항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 (정부합동평가지표)

□ 주요내용

- 가. 법률명을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변경함(제1조 및 제2조).
- 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기본전략”으로, “이행계획”을 “추진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함(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20조).
- 다. 고양시의회 및 국가위원회에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 라.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의2).
- 마.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로 명칭을 변경함(제7조, 제8조, 제19조 및 제20조).

제267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2년 11월 8일

고양시 조례 제2622호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고양시 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및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기도 도세 및 고양시 시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고양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5년간 계속하여 지방세(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개인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를 연간 5건 이상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단체·법인을 말한다.
3. “재정확충기여자”란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중 지방세 연간 납부

액이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 또는 단체는 3천만원 이상인 자로서 지방세 체납액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4. “세정시책유공자”란 세정업무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납세자편의, 신세원발굴 등을 말한다)에 적극 참여한 자를 말한다.
5. “지방세유공자”란 성실납세자·재정확충기여자·세정시책유공자로서 제4조에 따라 각각의 지방세유공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
6.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연도를 말하며, 지방세 연간 건수를 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제3조(지방세유공자의 날)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세입확충에 이바지한 자를 포상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7월 4일(「지방자치법」 제정일)을 고양시 지방세유공자의 날(이하 “지방세유공자의 날”로 한다)로 정한다.

- ② 시장은 지방세유공자의 날에 기념식을 진행하여 표창장 등을 수여하고, 지방세유공자 중 1명을 1일 명예 납세자보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지방세유공자의 날에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자를 예우하고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방세유공자 선정 기준 및 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세유공자로 선정한다. 다만, 각 호의 지방세유공자는 중복하여 선정하지 않는다.

1. 성실납세자: 제2조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중 지방세 납부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고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지방세유공자로 선정
2. 재정확충기여자: 구청장이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세유공자로 선정. 이 경우 구청장이 추천할 때에는 추천서 및 공적조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3. 세정시책유공자: 시장이 세정업무 관련 제도개선, 신세원 발굴, 외부 기관 표창, 은닉재산 신고 등 각종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고양시의 재정확충에 크게 이바지한 자를 지방세실무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추천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세유공자로 선정
- ②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지방세유공자로 선정된 개인·단체·법인에 대해 선정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세유공자로 선정된 자에게 선정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⑤ 시장은 매년 지방세유공자를 선정할 때 지방세 규모와 대상자의 수를 고려하여 선정 인원을 결정한다.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서 등 발급
2. 시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에 지방세유공자임을 적극 홍보
3.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4. 시 금고를 통한 대출, 예금금리 우대 등 금융우대 서비스 제공
5.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1년간 주차요금 면제
6. 고양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기획공연에 대하여 할인 혜택 제공
-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공개추첨 방식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공개추첨을 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3명 이상 참관해야 한다.
- ③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세유공자의 날에 표창장 또는 감사패 수여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
3. 선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세 5천만원 이하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납세담보 면제

4. 선정된 날부터 3년까지 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면제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서 등 서식의 모형·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를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중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3호”를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5호”로 한다.

소관부서		세정과
입안자	과장 성명	세정과장 김영남
	팀장 성명	세정팀장 차형수
	담당자 성명·전화	정희영 031-8075-2212

중요사항 대비표

현행	개정
<u>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u>	<u>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u>제2조(용어의 정의)</u> 1. “지방세”란 도세 및 시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현재 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자로서,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를 연간 3건 이상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지방세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3천만원 이상인 자로서 지방세 체납액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4.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란 세정업무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 및 납세편의 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 중 지방세 체납액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u>제2조(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기도 도세 및 고양시 시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고양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5년간 계속하여 지방세(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개인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를 연간 5건 이상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단체·법인을 말한다. 3. “재정확충기여자”란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중 지방세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 또는 단체는 3천만원 이상인 자로서 지방세 체납액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4. “세정시책유공자”란 세정업무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납세자편의, 신세원발굴 등을 말한다)에 적극 참여한 자를 말한다. 5. “지방세유공자”란 성실납세자·재정확충기여자·세정시책유공자로서 제4조에 따라 각각의 지방세유공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 6.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연도를 말하며,

현행	개정
<u>〈신 설〉</u> <u>제4조(대상자 선정방법) ①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u> <u>1. 제3조 제1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u> <u>2. 제3조 제2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u> <u>3. 제3조 제3호의 경우는 세정시책을 위한 탁월한 착안을 제공하거나 시책 추진에 큰 기여를 한 자를 선정한다.</u> <u>② 시장은 제1항 요건을 검토한 후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제46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u>	<u>지방세 연간 건수를 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u> <u>제3조(지방세유공자의 날)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세입 확충에 이바지한 자를 포상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7월 4일(「지방자치법」 제정일)을 고양시 지방세유공자의 날(이하 “지방세유공자의 날”로 한다)로 정한다.</u> <u>② 시장은 지방세유공자의 날에 기념식을 진행하여 표창장 등을 수여하고, 지방세유공자 중 1명을 1일 명예 납세자보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u> <u>③ 시장은 지방세유공자의 날에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자를 예우하고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u> <u>제4조(지방세유공자 선정 기준 및 방법)</u> <u>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세유공자로 선정한다. 다만, 각 호의 지방세유공자는 중복하여 선정하지 않는다.</u> <u>1. 성실납세자: 제2조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중 지방세 납부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고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지방세유공자로 선정</u> <u>2. 재정확충기여자: 구청장이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세유공자로 선정. 이 경우 구청장이 추천할 때에는 추천서</u>

현행	개정
<u>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u> <u>1. 성실납세자 및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u> 가. 고양시 금고를 통한 대출, 예금금리 우대 등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 관련회사에 성실납세자로 등록되어 신용정보 향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u>및 공적조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u> <u>3. 세정시책유공자: 시장이 세정업무 관련 제도개선, 신세원 발굴, 외부기관 표창, 은닉재산 신고 등 각종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고양시의 재정확충에 크게 이바지한 자를 지방세실무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추천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세유공자로 선정</u> <u>②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u> <u>③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지방세유공자로 선정된 개인·단체·법인에 대해 선정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u> <u>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세유공자로 선정된 자에게 선정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u> <u>⑤ 시장은 매년 지방세유공자를 선정할 때 지방세 규모와 대상자의 수를 고려하여 선정 인원을 결정한다.</u> <u>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1. 인증서 등 발급</u> <u>2. 시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에 지방세유공자임을 적극 홍보</u> <u>3.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u> <u>4. 시 금고를 통한 대출, 예금금리 우대 등 금융우대 서비스 제공</u>

현행	개정
<u>록 지원할 수 있다.</u>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가. 「지방세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세무조사 면제를 2년 이내에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나.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를 완화할 수 있다. 다.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우선 초청대상자로 선정한다. 3. 제2호의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의 10 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1년 이내 고양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성실납세자 선정, 지원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5.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1년간 주차요금 면제 6. 고양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기획공연에 대하여 할인 혜택 제공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공개추첨 방식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공개추첨을 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3명 이상 참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세유공자의 날에 표창장 또는 감사패 수여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 3. 선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세 5천만원 이하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납세담보 면제 4. 선정된 날부터 3년까지 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면제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서 등 서식의 모형·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특례시 출범과 함께 고양특례시민 납세자의 위상을 제고하고 성실납세자에게 기존의 형식적인 지원을 벗어나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 납세자에 대한 지원 확대로 납세의식을 높이고, 이에 따른 자진납부 증가 및 신뢰세정 구현으로 특례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제명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나.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다. 고양시 세입확충에 이바지한 자를 포상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7월 4일(「지방자치법」 제정일)을 지방세유공자의 날로 지정함(제3조).
- 라. 지방세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
- 마. 지방세유공자로 선정 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제5조).

제267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2년 11월 8일

고양시 조례 제2623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로, “관리계획”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24조 또는 제34조”를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하되”를 “하며,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7조의2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 허가할”을 “사용허가할”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수익의 방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대상)”을 “(수익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수익 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부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사용·수익 허가부를 비치하고”를 “사용허가부를 갖추 두고”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9조제5항 후단 중 “산정조서”를 “계산조서”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용·수익하지”를 “사용하지”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대부정리부의 비치)”를 “(대부정리부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비치하여야”를 “갖춰 두어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관사 관리대장의 비치)”를 “(관사 관리대장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비치”를 “갖춰 두고”로 한다.

제54조 중 “비치하고”를 “갖춰 두고”로 한다.

제56조 중 “망실”을 “분실”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변상금의 분할 납부)”를 “(변상금의 납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변상금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로 하며,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하려고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9조의2 중 “가산”을 “가산(加算)”으로 한다.

제62조 전단 및 후단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재산관리과
입안자	과장 성명	재산관리과장 김 학 배
	팀장 성명	재산관리팀장 김 태 일
	담당자 성명·전화	임 형 애 031-8075-2893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생략) ② (생략) 1.~3. (생략) 4. 법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5. (생략) 6.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7. (생략) ③ (생략) 1.~4. (생략)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중 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5. (현행과 같음) 6.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업무담당 실·국장 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 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③~④ (생략) 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생략)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현 행과 같음) ② ----- ----- ----- -----호선(互選)---. ③~④ (현행과 같음) ⑤ -----하며, 한 차례 만-----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 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 까지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 조의2----- ----- ----- ----- ----- -----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생략) <u><신설></u> 제17조의2(사전 협의)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무상으로 <u>사용·수익허가</u> 하거나 대부하고자 하는 경우와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하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생략)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u>사용·수익허가</u>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략) 제19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u>사용·수익 허가</u>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4. (생략) 5. <u>사용·수익허가</u>재산의 보존의무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7조의2(사전 협의) ----- -----<u>사용허가</u>----- ----- -----.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u>사용허가</u>-----. 1.~2.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허가) -----<u>사용허가</u>----- -----. 1.~4. (현행과 같음) 5. <u>사용허가</u>-----
--	--

6. 사용·수익허가재산에 대한 부과금
의 사용자 부담

7. (생략)

**제19조의2(수익의 방법에 따른 사용·수
익허가 대상) ①~②** (생략)

제20조(사용·수익 허가부의 비치) 재산
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
익 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
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
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
산을 관리 위탁할 때에는 영 제19조
및 영 제21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
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
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
3자에게 다시 빌려 줄 때에는 관리수
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
비용은 다시 빌려 받은 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
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
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⑥ (생략)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① 사용
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
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② (생략)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④ (생
략)

6. 사용허가-----

7.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수익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①~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용허가부의 관리) -----
-----사용허가
부를 갖추 두고-----

-----.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사용허가-----

-----.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허가-----

-----.

④~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① -----

-----사용허가-----

-----.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④ (현
행과 같음)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30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①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는 영 제29조제1항제1호의 경우로 한다.

②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 10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

계산조서-----.

⑥ (현행과 같음)

제30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①

-----사용허가-----

-----.

② -----
-----사용허가-----

-----.

③ -----
-----사용하지-----

-----.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

사용허가-----

-----.

1.~4. (생 략)

② (생 략)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 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4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생 략)

1.~10. (생 략)

제50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4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2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6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사용허가-----

-----.

④ -----
-----「고양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

제34조(대부정리부의 관리) ① -----
-----갖
취 두어야-----
-----.

② (현행과 같음)

1.~10. (현행과 같음)

제50조(관사 관리대장의 관리) -----

-----갖취 두고-----.

제54조(비품의 관리) -----

갖취 두고-----

-----.

제56조(변상조치) -----

-----분실-----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58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u>당해</u>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9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② (생략) <u><신설></u> 제59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u>가산</u>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62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u>당해</u>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u>당해</u>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 제58조(변상금의 부과) ① ----- ----- -----<u>해당</u>----- ----- -----.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변상금의 납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변상금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로 하며, <u>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하려고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u> 제59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 ----- ----- ----- -----<u>가산(加算)</u>----- -----. 제62조(공유토지의 분필) ----- ----- ----- -----<u>해당</u>----- ----- -----<u>해당</u>----- ----- ----- ----- -----.
--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2. 4. 21.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심의회 대상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를 포함함(제4조제2항 제4호 및 제6호).
- 나.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연임규정을 정비함(제4조의2제5항).
- 다.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로 위임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신설함(제11조제3항).
- 라. 시행령에서 조례에 정하게 되어 있는 변상금 징수유예 규정을 신설함(제59조제3항).
- 마. 상위법 용어 개정(사용·수익허가→사용허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30조 및 제31조).

제267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2년 11월 8일

고양시 조례 제2624호

고양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을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으로,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를 “제9조에 따른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제4조의 제목 “(지원방법)”을 “(지원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반찬가게, 편의점 등)를”을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반찬가게, 편의점 등을 말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급식카드”를 “아동급식카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 아동급식을 지원해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신청서” 를 “신청에 관한 사항”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해당하는지 여부” 를 “해당하는지” 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 를 “제9조에 따른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 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급식메뉴” 를 “급식식단” 으로 한다.

제11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5조 중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서식 중 신청의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추천) 의견	신청(추천) 사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	---

		[] 아동급식위원회의 급식지원 결정 아동(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
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 중복 선택 가능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희망 급식 방법	[] 집단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반찬가게, 편의점 등) [] 도시락 배달 []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아동청소년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아동청소년과장 권 혁 진
	팀 장 성 명	아동정책팀장 박 혜 정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지 은 031-8075-3358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생략)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신설> 2.~5. (생략)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생략) 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u>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u>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4조(지원방법) ① (생략) 1. (생략) 2. <u>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반찬가게,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u> 3.~4. (생략) ② 시장은 아침·점심·저녁 식사별로 <u>급식카드</u>를 이용하여 지원하되, 아동별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급식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u>시행령 제36조제6항</u>----- ----- --. 제3조(지원대상) (현행과 같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3.~6.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8. (현행 제7호와 같음) 9. ----- ----- -----<u>제9조에 따른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u>----- ---- 제4조(지원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반찬가게, 편의점 등을 말한다)을</u>--- --- 3.~4. (현행과 같음) ② ----- <u>아동급식카드</u>----- ----- -----.

③ (생 략)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는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급식지원 신청) ① (생 략)

1. 아동급식 신청서

2.~3. (생 략)

②~④ (생 략)

제7조(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9조에 따른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④ (생 략)

제8조(급식업체 선정) ① (생 략)

② 시장은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급식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9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생 략)

1.~2. (생 략)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 아동급식을 지원해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 ① (현행과 같음)

1. -----신청에 관한 사항

2.~3.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제7조(대상자 선정) ① -----

-----해당하는지-----

-----.

②~④ (현행과 같음)

제8조(급식업체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9조에 따른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급식식단-----
--

4.~7. (생 략) 제11조(해촉) (생 략) 1.~3. (생 략) 4.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 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4.~7. (현행과 같음) 제11조(해촉)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5조(수당 등) ----- -----「고 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조례」----- -----. <삭 제> <삭 제>
---	---

현행			개정		
〔별지 서식〕 아동 급식 신청서 (생략)			〔별지 서식〕 아동 급식 신청서 (현행과 같음)		
신청 의견	신청사유 (자세히 기재)		신청 (추천) 사유 신청 (추천) 의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 질환, 만성질환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의 급식지원 결정 아동(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
	급식지원 필요 유형	※ 중복 선택 가능 ☐ 연중 조식식 : ☐ 조식 ☐ 석식 ☐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 방학 중 중식		급식 지원 필요 유형 (결식 여부)	※ 중복 선택 가능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학기 중 평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고양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아동급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 및 아동급식 지원 대상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비하고,
-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 중 아동급식 단가 개선에 대한 지자체 조례 반영 권고안에 따라 생활 물가를 고려한 현실적인 급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제1조 및 제 11조).
- 나. 아동급식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함(제3조 및 별지 서식).
- 다.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최저 기준 이상의 급식단가 보장을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함(제4조제5항).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267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2년 11월 8일

고양시 조례 제2625호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3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④ (생략) ⑤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위원으로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u><삭제></u>
제8조(심의위원회 회의) ①·② (생략)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u>다만,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④ (생략)	제8조(심의위원회 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단서 삭제></u> ④ (현행과 같음)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자:** 공소자·고덕희·문재호 의원(찬성의원: 김민숙 의원 등 12명)

□ 제안이유

- 공정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의 안건심의 참여 요건을 강화하고 원활한 연구단체 활동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불필요한 심의위원회 간사 규정을 삭제함(제6조).
- 나. 공정한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의원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단서 조항을 삭제함(제8조).

제267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2년 11월 8일

고양시 조례 제2626호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 진행 등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로 구성된 의원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정립 및 정당 정책의 교류·협력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

제4조(구성)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교섭단체 명칭, 구성 연월일, 대표의원 성명 및 직인, 소속 의원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변경 등 신고)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의장은 제3조의 교섭단체 기능 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구성 신고서

☐ 교섭단체 명칭:

☐ 구성연월일:

☐ 대표의원 성명 및 직인

성명		직인
한글		
한자		

☐ 소속 의원 명부

연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명	비고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직인)

고양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보고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 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 “구분”란에는 교섭단체의 “명칭 변경” 또는 “대표의원 변경” 등을 기재

☐ 대표의원 성명 및 직인

성 명		직 인
한 글		
한 자		

☐ 소속 의원 명부

연 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 명	비고

※ 1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서명”란은 불요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직인)

고양시의회 의장 귀하

교섭단체 소속 의원 변경 보고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의원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 사항

대 상 의 원		변 경 사 항			비 고
교섭단체명	성 명	일 자	내 용*	사 유**	

* 변경 사항 중 “내용”란에는 “가입”, “탈퇴” 등을 기재

** 변경 사항 중 “사유”란에는 “당적 취득”, “의원직 상실”, “사망” 등을 기재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직인)

또는

고양시의회 의원 ○ ○ ○ (서명)

고양시의회 의장 귀하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안자:** 김미수 · 이철조 의원(찬성의원: 조현숙 의원 등 15명)

□ 제안이유

- 고양시의회 의원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교섭단체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다. 교섭단체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제267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2년 11월 8일

고양시 조례 제2627호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여 고양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자”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홍보 및 상담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
4. 그 밖에 시장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희망 참여 확산을 위하여 각 구 보건소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등록·접수 창구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제6조(지원) ① 시장은 기증문화 확산을 위해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증자(뇌사자로 한정한다)에게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로금을 지원 받으려는 경우 법 제4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 별지 서식의 지급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뇌사자) 위로금 지급신청서						
기 증 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기증일시		년 월 일				
기증장소(의료기관명)						
청구금액 (위로금)	일금 _____ 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기증자와의 관계	
입금계좌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예금주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4.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안자: 김운남 · 고덕희 · 신인선 의원(찬성의원: 천승아 의원 등 6명)

□ 제안이유

- 고양시민 중 장기등 및 인체조직 이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공평하게 이식받을 기회를 보장받고 활발한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기증문화 장려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을 규정함(제4조).
- 나. 장기등 및 인체조직 접수창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부터 제6조까지).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2년 11월 8일

고양시 규칙 제1148호

고양시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양시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양시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을 “고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고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을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으로,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타인의”를 “타인의 부당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9호 중 “저해하는”을 “해치는”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 중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요구 하여서는” 을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으로 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직무권한 등을 남용한 부당 행위의 금지)” 를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사함에 있어 지위·직책 등을 이용하여” 를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으로, “투자기관에” 를 “단체에 공무원” 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을 “제4호 각 목의 기관” 으로, “투자기관” 을 “단체” 로 한다.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21조의2제1항제1호 중 “금품 등의” 를 “금품등의” 로 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외부강의 등” 을 “외부강의등”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그렇지 않다”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저해할” 을 “방해할” 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자신의” 를 “공무원이 자신의” 로, “사실을 공무원이” 를 “사실을” 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교육하여야”를 “교육을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하여야”를 “교육을 해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9조 및 제24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소관부서		감 사 관
입 안 자	과 장 성 명	감 사 관 원 송 희
	팀 장 성 명	청렴팀장 김 미 애
	담 당 자 성명·전화	최 은 정 031-8075-2132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1조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무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 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 ·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 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 · 단서 및 제3호 본문 · 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 · 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 · 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고양시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	고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제3조(적용 범위) ① (생략)	제3조(적용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고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와 공중보건의사 및 청원경찰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② 「고양시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공무직근로자----- ----- ----- -----.
제5조(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의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7.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8. 시 소속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9.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0. 최근 2년 이내에 인가·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1. 그 밖에 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⑦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시장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시장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 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삭 제>

<삭 제>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시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시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8조(가족 채용 제한) ① 시장은 시 또는 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시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투자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시장은

시 또는 투자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시, 투자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기관을 지휘·감독·규제·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투자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투자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공무원

은 직무관련자인 시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퇴직자가 재직하고 있

<삭 제>

<삭 제>

는 법인·단체와 퇴직자의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③ (생략)

1.~8. (생략)

9. 그 밖에 시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9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공용차량·관사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

-----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
-----타인의 부당한-----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8. (현행과 같음)

9. -----
-----해치는-----

<삭제>

제20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의2(직무권한 등을 남용한 부당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지위·직책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투자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신설>

<신설>

<신설>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투자기관의 권리·권한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

제20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

1.~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 공무원-----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
----제4호 각 목의 기관----단체-----

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1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생략)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2. (생략)

②~③ (생략)

제2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략)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③~④ (생략)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생략)

제24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현행과 같음)

1. -----
-----금품등의-----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외부강의등-----

-----그렇지 않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방해할-----
-----.

⑥ (현행과 같음)

<삭제>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u>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u> <u>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u> 제3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생략) 1. (생략) 2. <u>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공무원이 알게 된 경우</u> ②~⑦ (생략) 제32조(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이상 <u>교육하여야 한다.</u> ② 시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규칙에 대하여 <u>교육하여야 한다.</u>	제3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공무원이 자신의</u>----- ----- ----- --<u>사실</u>----- ②~⑦ (현행과 같음) 제32조(교육) ① ----- ----- ----- -----<u>교육을 해야</u>-----. ② ----- -----<u>교육을 해야</u>-----.
--	--

현행	개정
[별표 1] <u>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u>(제21조 관련) - 음식물(제공자와 공무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u>10만원으로 한다.</u>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1] <u>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u>(제21조 관련) - 음식물(제공자와 공무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u>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u>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별지 제3호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법인·단체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고양시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삭 제>

[별지 제4호서식]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 급)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1. 자신, 2.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법인·단체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고양시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삭 제>

[별지 제5호서식]

의 건 서

성 명	
소 속	
직 위(직 급)	
담 당 업 무	

의
건

「고양시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삭 제>

[별지 제6호서식]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 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고양시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기에 위와 같이 조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삭 제>

[별지 제7호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대한 확인·조치 내역서

접수번호		접수일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 급)		
	연락처		
관련 사항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1. 자신, 2.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법인·단체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확인 사항			
조치 내역			
그 밖의 참고사항			
		확인점검일: 년 월	
일			
		확 인 점	
검자:	(서명 또는 인)		

<삭 제>

[별지 제8호서식]

시장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타					
「고양시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삭 제〉

[별지 제9호서식]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 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	성명	연락 처	
	현 소속		
	퇴직 전 소속	퇴직 일	
접촉 일시	장소		
접촉 유형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		
접촉 사유			
비용 부담자			
참고서류			

「고양시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시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삭 제>

[별지 제15호서식]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	직위(직급)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	연락처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	연락처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 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래 상대방	성명	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	연락처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 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고양시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 소명자료 첨부		

<삭 제>

고양시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제안이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으로 상위법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적이해관계 신고 등 이해충돌방지법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용어 등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에 대해 설날과 추석기간*에 한하여 가액범위를 두 배(10만원 → 20만원)로 상향한 것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

□ 주요내용

- 가. 제명 “고양시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을 “고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으로 개정함.
- 나. 상위법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함(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9조 및 제24조 삭제).
- 다. 상위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제13조제1항, 제20조의2제4항 및 제5항).
- 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신고서 등 별지 서식을 삭제함(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 및 제15호서식 삭제).
- 마.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날·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두 배로 상향하는 규정을 정비함(별표 1 제3호).
-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양시장이동환인

2022년 11월 8일

고양시 규칙 제1149호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홍도동란 25통 및 26통 5반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27통 및 28통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명 (행정동)	통	반	관할구역
홍도동	25	1	도내동 951 힐사이드파크1차 상가 및 701호~1028호
		2	도내동 951 힐사이드파크1차 1101호~1428호
		3	도내동 951 힐사이드파크1차 1501호~1828호
		4	도내동 951 힐사이드파크1차 1901호~2320호
		5	도내동 951-1 가림타워오피스텔 상가 및 701호~1025호
		6	도내동 951-1 가림타워오피스텔 1101호~1525호
		7	도내동 951-1 가림타워오피스텔 1601호~2025호
		8	도내동 951-1 가림타워오피스텔 2101호~2525호
		9	도내동 952
	26	5	도내동 중 969, 970, 971, 976, 977, 978, 979, 980, 981, 982
	27	1	도내동 967외 1필지 고양원흥중시티 상가 및 701호~844호
		2	도내동 967외 1필지 고양원흥중시티 901호~1144호
		3	도내동 967외 1필지 고양원흥중시티 1201호~1444호
		4	도내동 967외 1필지 고양원흥중시티 1501호~1744호
		5	도내동 967외 1필지 고양원흥중시티 1801호~2044호
		6	도내동 967외 1필지 고양원흥중시티 2101호~2344호
		7	도내동 중 964, 965, 966
	28	1	도내동 954 원흥베네하임3차 상가 및 801호~1124호
		2	도내동 954 원흥베네하임3차 1201호~1527호
		3	도내동 954 원흥베네하임3차 1601호~1927호

		4	도내동 954 원흥베네하임3차 2001호~2427호
		5	도내동 중 953,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같은 표 중 효자동란 17통 및 18통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명 (행정동)	통	반	관 할 구 역
효자동	17	1	고양지축 A-1블록 신혼희망타운 101동 1층~12층
		2	고양지축 A-1블록 신혼희망타운 101동 13층~24층
		3	고양지축 A-1블록 신혼희망타운 102동 1층~10층
		4	고양지축 A-1블록 신혼희망타운 102동 11층~21층
		5	고양지축 A-1블록 신혼희망타운 103동 1층~9층
		6	고양지축 A-1블록 신혼희망타운 103동 10층~19층
		7	고양지축 A-1블록 신혼희망타운 104동 1층~12층
		8	고양지축 A-1블록 신혼희망타운 104동 13층~24층
		9	고양지축 A-1블록 신혼희망타운 105동 1층~10층
		10	고양지축 A-1블록 신혼희망타운 105동 11층~21층
		11	고양지축 A-1블록 신혼희망타운 106동 1층~11층
		12	고양지축 A-1블록 신혼희망타운 106동 12층~24층
		13	고양지축 A-1블록 신혼희망타운 107동 1층~13층
		14	고양지축 A-1블록 신혼희망타운 107동 14층~24층
		15	고양지축 A-1블록 신혼희망타운 108동 1층~12층
		16	고양지축 A-1블록 신혼희망타운 108동 13층~24층
		17	고양지축 A-1블록 신혼희망타운 109동 1층~12층
	18	18	고양지축 A-1블록 신혼희망타운 109동 13층~23층
		1	지축동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 101동 101호~2802호
		2	지축동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 101동 104호, 203호~2804호
		3	지축동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 102동 101호~2802호
		4	지축동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 102동 104호, 203호~2804호
		5	지축동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 103동 101호~2802호
		6	지축동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 103동 104호, 203호~2804호

같은 표 중 삼송2동란 24통 및 25통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동명 (행정동)	통	반	관 할 구 역
삼송2동	24	1	원흥동 614 고양삼송엘에이치10단지아파트 1001동 119호~542호
		2	원흥동 614 고양삼송엘에이치10단지아파트 1001동 601호~942호
		3	원흥동 614 고양삼송엘에이치10단지아파트 1002동 101호~526호
		4	원흥동 614 고양삼송엘에이치10단지아파트 1002동 601호~1026호
		5	원흥동 614 고양삼송엘에이치10단지아파트 1003동
		6	원흥동 614 고양삼송엘에이치10단지아파트 1004동
		7	원흥동 완충녹지 11, 중로 3-1
	25	1	원흥동 600 고양삼송 엘에이치 13단지 아파트 1301동
		2	원흥동 600 고양삼송 엘에이치 13단지 아파트 1302동
		3	원흥동 600 고양삼송 엘에이치 13단지 아파트 1303동
		4	원흥동 600 고양삼송 엘에이치 13단지 아파트 1304동

동명 (행정동)	통	반	관 할 구 역
		5	원흥동 600 고양삼송 엘에이치 13단지 아파트 1305동
		6	원흥동 600 고양삼송 엘에이치 13단지 아파트 1306동
		7	원흥동 600 고양삼송 엘에이치 13단지 아파트 1307동
		8	원흥동 600 고양삼송 엘에이치 13단지 아파트 1308동
		9	원흥동 600 고양삼송 엘에이치 13단지 아파트 1309동, 1310동
		10	원흥동 600 고양삼송 엘에이치 13단지 아파트 1311동, 1312동
		11	원흥동 600 고양삼송 엘에이치 13단지 아파트 1313동, 1314동
		12	원흥동 600 고양삼송 엘에이치 13단지 아파트 1315동, 1316동
		13	원흥동 공공녹지 36, 완충녹지 13, 경관녹지 83·84

같은 표 중 능곡동란 3통 1반부터 4반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통에 5반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4통 및 5통 1반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7통, 19통 및 20통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동명 (행정동)	통	반	관 할 구 역
능곡동	3	1	토당동 중 277-3468-10-11-13-14-15-16-17-18-19-20-21-22-23, 278-2, 301, 574-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 278-5, 282-10-12, 283-8-14, 285-1, 288-4, 289-4, 290-1-5-6-7-8-9-10,
		2	토당동 중 55-4-5-6-11, 289-2-5-6-8-9-10-11, 290-12-13-14-15-16-17-18-19-20-21-22-23-24-25, 290-26(백제빌라)
		3	토당동 대곡역두산위브주상복합 201동
		4	토당동 대곡역두산위브주상복합 202동, 상가
		5	토당동 대곡역두산위브오피스텔, 상가
	4	1	토당동 중 734-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 736-1-2-3-4-5-6-7-8-15-16-17-18-19-20-21-22-23-24-25-27, 739-1-2-3
		2	토당동 중 195,198,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8-1, 589-1, 591, 591-1, 592, 594, 603, 606, 607, 608, 608-1, 609-1, 610-1, 611, 612, 612-1, 613, 614, 615, 616, 624, 625, 626, 627, 629, 629-1-2-3-4-5-6-7-8-9-10-11-13-14-15-74-75-77
		3	토당동 중 828, 828-1-2-3-4-5-6-7-8-9-10-11-12-13, 829, 829-1-2-3-4-5-6-7-8-9-10-11-12, 830, 830-1-2-3-4-5-6-7-8-9-10-11-12-13-14-15-16-17-18-19
		4	토당동 282-2번지 금호주상복합아파트 301호~1203호, 1301호~1402호
		5	토당동 282-2번지 금호주상복합아파트 304호~1404호, 상가
		6	토당동 282-2번지 금호주상복합아파트 306호~1207호, 1305호~1408호
	5	1	토당동 339-1-2-3-4, 338-1-2-3-5, 340-1-2-3-4-5-6-7-8-9, 341-5, 343-1-2-3-4-5
	7	1	토당동 대곡역두산위브아파트 101동
		2	토당동 대곡역두산위브아파트 102동
		3	토당동 대곡역두산위브아파트 103동
		4	토당동 대곡역두산위브아파트 104동
		5	토당동 대곡역두산위브아파트 105동
	19	1	토당동 대곡역롯데캐슬엘클라씨 101동
		2	토당동 대곡역롯데캐슬엘클라씨 102동
		3	토당동 대곡역롯데캐슬엘클라씨 104동
		4	토당동 대곡역롯데캐슬엘클라씨 105동

동명 (행정동)	통	반	관할구역
	20	5	토당동 대곡역롯데캐슬엘클라씨 106동
		6	토당동 대곡역롯데캐슬엘클라씨 107동
		7	토당동 대곡역롯데캐슬엘클라씨 112동
		1	토당동 중 251-16, 252-8
		2	토당동 대곡역롯데캐슬엘클라씨 103동
		3	토당동 대곡역롯데캐슬엘클라씨 108동
		4	토당동 대곡역롯데캐슬엘클라씨 109동
		5	토당동 대곡역롯데캐슬엘클라씨 110동
		6	토당동 대곡역롯데캐슬엘클라씨 111동, 상가

같은 표 중 행신4동란 12통 3반부터 7반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14통 7반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명 (행정동)	통	반	관할구역
행신4동	12	3	행신동 1074 서정마을 108동 101호~1408호
		4	행신동 1074 서정마을 110동 101호~1506호
		5	행신동 1074 서정마을 111동 201호~1504호
		6	행신동 1074 서정마을 112동 101호~1506호
		7	행신동 1074 서정마을 113동 101호~1504호
	14	7	행신동 1064 서정마을 1202동 103호~1510호

같은 표 중 화전동란 16통부터 25통까지, 및 28통부터 30통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동명 (행정동)	통	반	관할구역
화전동	16	1	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01동
		2	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02동
		3	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03동
		4	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04동
		5	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05동
		6	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06동
		7	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07동
	17	1	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08동
		2	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09동
		3	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10동
		4	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11동
		5	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12동
		6	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13동
		7	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14동
		8	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15동

동명 (행정동)	통	반	관할구역
	18	9	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16동
		1	향동동 571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2단지 201동 101호~2002호
		2	향동동 571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2단지 202동 102호~2104호
		3	향동동 571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2단지 203동 102호~1704호
		4	향동동 571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2단지 204동 101호~1204호
		5	향동동 571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2단지 205동 101호~1604호
		6	향동동 571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2단지 206동 101호~2103호
	19	7	향동동 571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2단지 207동 101호~2102호
		1	향동동 557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3단지 301동 101호~2102호
		2	향동동 557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3단지 302동 101호~2402호
		3	향동동 557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3단지 303동 101호~2702호
		4	향동동 557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3단지 304동 101호~2902호
		5	향동동 557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3단지 305동 101호~2904호
		6	향동동 557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3단지 306동 101호~2902호
	20	7	향동동 557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3단지 307동 101호~2704호
		8	향동동 557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3단지 308동 101호~2402호
		1	향동동 552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4단지 401동 102호~2904호
		2	향동동 552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4단지 402동 201호~2902호
		3	향동동 552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4단지 403동 101호~2202호
		4	향동동 552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4단지 404동 201호~2102호
		5	향동동 552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4단지 405동 101호~2404호
	21	1	향동동 552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4단지 406동 201호~2802호
		2	향동동 552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4단지 407동 101호~2804호
		3	향동동 552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4단지 408동 102호~2904호
		4	향동동 552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4단지 409동 102호~2904호
		5	향동동 552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4단지 410동 101호~2704호
	22	1	향동동 421 디엠씨해링턴플레이스엔에이치에프 1001동 101호~2104호
		2	향동동 421 디엠씨해링턴플레이스엔에이치에프 1002동 101호~1704호
		3	향동동 421 디엠씨해링턴플레이스엔에이치에프 1003동 101호~2005호
		4	향동동 421 디엠씨해링턴플레이스엔에이치에프 1004동 101호~2106호
		5	향동동 421 디엠씨해링턴플레이스엔에이치에프 1005동 101호~2104호
		6	향동동 421 디엠씨해링턴플레이스엔에이치에프 1006동 101호~2105호
		7	향동동 421 디엠씨해링턴플레이스엔에이치에프 1007동 101호~2105호
		8	향동동 421 디엠씨해링턴플레이스엔에이치에프 1008동 101호~2105호
	23	1	향동동 421 디엠씨해링턴플레이스엔에이치에프 1009동 101호~2005호
		2	향동동 421 디엠씨해링턴플레이스엔에이치에프 1010동 101호~2105호
		3	향동동 421 디엠씨해링턴플레이스엔에이치에프 1011동 101호~2105호
		4	향동동 421 디엠씨해링턴플레이스엔에이치에프 1012동 101호~2105호
		5	향동동 421 디엠씨해링턴플레이스엔에이치에프 1013동 101호~2105호
		6	향동동 421 디엠씨해링턴플레이스엔에이치에프 1014동 101호~1706호
		7	향동동 421 디엠씨해링턴플레이스엔에이치에프 1015동 101호~2106호
	24	1	향동동 517 디엠씨하우스디엔에이치에프 201동 101호~2402호
		2	향동동 517 디엠씨하우스디엔에이치에프 202동 101호~2905호
		3	향동동 517 디엠씨하우스디엔에이치에프 203동 201호~2603호
		4	향동동 517 디엠씨하우스디엔에이치에프 204동 201호~2502호

동명 (행정동)	통	반	관 할 구 역
	25	1	향동동 407 고양향동엘에이치1단지 101동 101호~2112호
		2	향동동 407 고양향동엘에이치1단지 102동 101호~2108호
		3	향동동 407 고양향동엘에이치1단지 103동 101호~2116호
	28	1	향동동 406 향동마을4단지 401동
		2	향동동 406 향동마을4단지 402동
	29	1	향동동 405 DMC 두산위브 더 퍼스트 301동
		2	향동동 405 DMC 두산위브 더 퍼스트 302동
		3	향동동 405 DMC 두산위브 더 퍼스트 303동
		4	향동동 405 DMC 두산위브 더 퍼스트 304동
		5	향동동 405 DMC 두산위브 더 퍼스트 305동
	30	1	향동동 405 DMC 두산위브 더 퍼스트 306동
		2	향동동 405 DMC 두산위브 더 퍼스트 307동
		3	향동동 405 DMC 두산위브 더 퍼스트 308동
		4	향동동 405 DMC 두산위브 더 퍼스트 309동

같은 표 중 대덕동란 16통부터 18통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명 (행정동)	통	반	관 할 구 역
대덕동	16	1	덕은동 DMC한강에일린의 플 101동 201호~2702호
		2	덕은동 DMC한강에일린의 플 101동 203호~2704호
		3	덕은동 DMC한강에일린의 플 102동 201호~2702호
		4	덕은동 DMC한강에일린의 플 102동 203호~2704호
	17	1	덕은동 덕은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101동 201호~2501호
		2	덕은동 덕은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101동 203호~2505호
		3	덕은동 덕은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102동 201호~2501호
		4	덕은동 덕은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103동 301호~2501호
		5	덕은동 덕은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104동 201호~2402호
		6	덕은동 덕은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104동 403호~2503호
	18	1	덕은동 힐스테이트에코덕은 1동 201호~346호
		2	덕은동 힐스테이트에코덕은 1동 401호~546호
		3	덕은동 힐스테이트에코덕은 1동 601호~746호
		4	덕은동 힐스테이트에코덕은 1동 801호~946호
		5	덕은동 힐스테이트에코덕은 1동 1001호~1146호
		6	덕은동 힐스테이트에코덕은 1동 1201호~1346호
		7	덕은동 힐스테이트에코덕은 1동 1401호~1546호
		8	덕은동 힐스테이트에코덕은 1동 1601호~1746호

같은 표 중 식사동란 5통 및 6통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11통에 4반을 신설하며, 23통을 다음과 같이 하고, 24통부터 27통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명 (행정동)	통	반	관 할 구 역
식사동	5	1	식사동 중 670-6 · 7 · 14 · 64 · 65 · 72 · 78

동명 (행정동)	통	반	관 할 구 역
	6	2	670-9,10,54,56,59,66,80,81,82
		3	670-8,11,35,36,37,38,39,40,42,43,44,45,47,49,50,51 670-27,28, 671, 671-1,3,4 672, 672-1,2
		4	673-1,2,3,4,5,6,7,8,9, 674-1,4 814-81,106,107, 1514, 1514-1 1517, 1518, 1519, 1521 1521-1,3,4,5,6 1522, 1525
		5	814-32,33,39,42,43,45,47,48,49,78,79,80,83,85, 산 167-15
		6	814-35,36,40,41,50,52,74,86,112, 113,114,115,117,118, 662-2·7·11·13·15·17·19·24·26, 663, 663-2, 665, 666, 815-2·4-6, 847-2
		7	814-24,27,76,88,89,90,91,92,94,95,96,97,98,100,102,103,104,105 식사동 중
		1	751-2, 752-1-27, 753, 753-1-10, 754-3-6 755, 756, 757, 757-1-4, 762, 763, 763-1-7, 763-1-7, 769-1-14, 770-1-20, 777 777-1-3, 781, 781-1-5
		2	740, 740-2-6, 743, 741, 741-5, 744 ,745, 745-1-5, 746, 746-1-3, 747-1-16, 748, 748-2, 749-1-10, 758, 759, 760, 761
		3	727, 728-1-9, 729, 729-1-45, 730-1-10, 731, 732, 732-1-6,
		4	741, 741-1,3,6,7,8,10,11,12,13,14, 783, 783-1-6, 789, 789-1,2,8,15, 790-2,4,5,7, 산184, 산182-1 716, 716-7,8,16,17,23,45,51
		5	1481, 1483(학교), 1484, 1484-1,2,3, 1485, 1485-1,2,3, 1485(공원), 1478, 1479(공원), 1477(학교)
		6	719, 720, 721, 721-1,5,6,7,10,13,14, 722, 722-2,5,7 산160-1, 산160-2,3,8,19
	11	4	식사2지구 4블럭, 12블럭
	23	1	식사자이2지구 1블럭 101동 201호~3005호
		2	식사자이2지구 1블럭 102동 201호~2805호
		3	식사자이2지구 1블럭 103동 201호~2805호
		4	식사자이2지구 1블럭 104동 301호~2604호 식사자이2지구 1블럭 상가동
		5	식사자이2지구 1블럭 105동 201호~3205호
		6	식사자이2지구 1블럭 106동 201호~3005호
	24	1	식사자이2지구 2블럭 201동 102호~3003호
		2	식사자이2지구 2블럭 202동 102호~3204호
		3	식사자이2지구 2블럭 203동 102호~3205호
		4	식사자이2지구 2블럭 204동 102호~3204호
		5	식사자이2지구 2블럭 205동 102호~3205호
	25	1	식사자이2지구 2블럭 206동 101호~2804호
		2	식사자이2지구 2블럭 207동 101호~3205호
		3	식사자이2지구 2블럭 208동 101호~3205호
		4	식사자이2지구 2블럭 209동 101호~3205호
		5	식사자이2지구 2블럭 210동 210호~2002호, 식사자이2지구 2블럭 상가동
		6	식사자이2지구 3블럭
	26	1	식사동 809-12,13,14,15,19,22,23,27,28,33,36,42,48,49,51,52,54,56,57,66 793-1,2,4 산175 동국대병원 식사동 중 812-2·6 817-1·2·4·5, 832, 832-3·7·8·20·28·29·36·41·43·44·46·48·54·55·68~74·75·77~81, 1013-1, 1014-1, 1015, 1016-1, 1019, 1020, 1020-1, 1021, 1022, 1022-1, 1025, 1026, 1026-1, 1027, 1028, 1029, 1030, 1033, 1034, 1034-3, 1035, 1036, 1037, 1038, 1038-1, 1039, 1040, 1040-1, 1041, 1042, 1043, 1056-5, 1057
		2	
		3	식사동 중 825-10,11,12,42,54, 832-4,5,15,38,57,58,59,61,63,66,67
		4	식사동 중 1006, 1006-1·2, 1007, 1008, 1009, 1009-1, 1013, 1014, 1016

동명 (행정동)	통	반	관 할 구 역
	27	1	식사2지구 5블럭 베네하임
		2	식사2지구 6블록, 7블럭, 8블럭, 9블럭, 10블럭, 11블럭, 12블럭

같은 표 중 고봉동란 13통을 다음과 같이 하고, 29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명 (행정동)	통	반	관 할 구 역
고봉동	13	1	성석동 1342~1345, 1370, 1370-1~6, 1372, 1400-1~16, 1401-8, 1402, 1405~1406, 1408, 1409, 1410-1·2·3·6·7·10·11, 1413~1415, 2115~2118, 2120~2125, 2154, 2154-1~5, 2184~2194
		2	성석동 산200, 1161, 1164~1167, 1168, 1168-1~10, 1168-14~16, 1168-20, 1170~1174, 1176, 1178, 1180, 1182~1185, 1186-1~3·5·7·8, 1187-1~5, 1188~1190, 1193~1201, 1364~1366, 1366-1~5, 1367, 1374-1·2·6~14, 1375, 1375-1~4, 1376, 1377, 1377-1·2·4, 1378, 1378-1·2, 1379, 1379-1~3, 1380-1·3~5·8, 1381, 1381-1~4, 1382, 1383, 1383-2, 1384, 1385, 1385-1~2, 1386, 1387, 1387-1, 1388, 1389, 1389-2·3, 1390, 1391-1~4, 1393, 1393-1·3, 1394, 1394-1~3, 1395-1·3~8·10·13·15·17~19·22·23, 1396, 1397-1~3, 1398-1·2, 1399-1~5, 1401-1~6, 1402~1404, 1411-1~4, 1412, 1493-6, 1513, 1521, 1849~1866, 1871~1876, 1883~1887, 1890~1896, 1899, 2108~2114
	29	1	성석동 산203, 산205-9, 산207-9~11·13·15·17·18, 산208-3·4·10·11, 1305-4·7·23·24, 1306, 1329~1334, 1336, 1337, 1338-2, 1424-2, 1424~1429, 1432-1·2·4, 1434, 1436~1441, 1442-1·4~8, 1443~1445, 1445-1·2·6·10~12, 1446-1·3·5·7·9, 1457~1463, 1493-1·2, 1526~10, 1528, 2140, 2141, 2141-1, 2142, 2142-1·2, 2143, 2143-1, 2144, 2144-1, 2145, 2146, 2147, 2148-1·2·3, 2149, 2149-1~3, 2150, 2150-1~3, 2151~2153, 2148~2153, 2155, 2155-1, 2156~2163, 2164-2, 2165-2, 2166~2172, 2174-2, 2174~2176
		2	성석동 1338, 1338-3·5·6, 1421, 1447-1, 1447~1449, 1447-1, 1449, 1452, 1452-1·2·4·5~7, 1453, 1454-2·3, 1455, 1455-2·3·7·8·10~12·14, 1456, 1456-2~5·9~11, 2126~2139, 2178~2186

같은 표 중 일산1동란 21통 1반부터 5반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동명 (행정동)	통	반	관 할 구 역
일산1동	21	1	일산동 973-31 동문3차 301동 101호~1802호
		2	일산동 973-31 동문3차 301동 103호~1404호, 105호~1006호
		3	일산동 973-31 동문3차 302동 101호~1005호, 3차 상가
		4	일산동 973-31 동문3차 302동 110호1~2005호
		5	일산동 973-31 동문3차 302동 106호~2007호

같은 표 중 일산2동란 24통 및 25통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명 (행정동)	통	반	관 할 구 역
일산2동	24	1	일산동 e편한세상어반스카이 101동 301~2602호
		2	일산동 e편한세상어반스카이 101동 2701~4902호
		3	일산동 e편한세상어반스카이 101동 303~2604호
		4	일산동 e편한세상어반스카이 101동 2703~4904호
		5	일산동 e편한세상어반스카이 102동 301~2602호
		6	일산동 e편한세상어반스카이 102동 2701~4902호

동명 (행정동)	통	반	관할구역
	25	7	일산동 e편한세상어반스카이 102동 303~2604호
		8	일산동 e편한세상어반스카이 102동 2703~4904호
		1	일산동 e편한세상어반스카이 103동 301~2602호
		2	일산동 e편한세상어반스카이 103동 2701~4902호
		3	일산동 e편한세상어반스카이 103동 303~2604호
		4	일산동 e편한세상어반스카이 103동 2703~4904호
		5	일산동 e편한세상어반스카이 104동 301~2602호
		6	일산동 e편한세상어반스카이 104동 2701~4902호
		7	일산동 e편한세상어반스카이 104동 303~2605호
		8	일산동 e편한세상어반스카이 104동 2703~4905호

같은 표 중 일산3동란 4통 및 18통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24통 및 25통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명 (행정동)	통	반	관할구역
일산3동	4	1	일산동 1066 후곡마을 401동
		2	일산동 1066 후곡마을 402동
		3	일산동 1066 후곡마을 403동
		4	일산동 1066 후곡마을 404동
	18	1	일산동 1077 후곡마을 1501동, 1080,1081,1081-12(상가)
		2	일산동 1077 후곡마을 1502동
		3	일산동 1077 후곡마을 1503동
		4	일산동 1077 후곡마을 1504동
		5	일산동 1077 후곡마을 1505동
	24	1	일산동 1063, 1063-1,1064,1064-1-2-3-4-5(상가) 일산동 1066 후곡마을 405동
		2	일산동 1066 후곡마을 406동
		3	일산동 1066 후곡마을 407동
		4	일산동 1066 후곡마을 408동
		5	일산동 1077 후곡마을 1506동 일산동 1078, 1078-1, 1079, 1079-1-2-3-4-5(상가)
	25	1	일산동 1077 후곡마을 1506동 일산동 1078, 1078-1, 1079, 1079-1-2-3-4-5(상가)
		2	일산동 1077 후곡마을 1507동
		3	일산동 1077 후곡마을 1508동
		4	일산동 1077 후곡마을 1509동
		5	일산동 1077 후곡마을 1510동

같은 표 중 대화동란 29통 9반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명 (행정동)	통	반	관 할 구 역
대화동	29	9	대화동 908-1, 927-1, 946-2, 948-2, 949-2, 950-2, 968-2, 969-2, 970-2, 970-4, 975-3, 985-2, 986-2, 987-2, 988-5, 994-2, 995-1, 997-3, 999-2, 1000-2, 1030-2~3, 1031-2~3, 1032-3, 1033-2~4, 1034-2~4, 1039-2~4, 1049, 1049-1~3, 1050-1~167, 1051, 1051-1~4, 1052-2, 1053-1~5, 1054-1, 1054-4, 1055-1~6, 1058-2, 1059-1~3, 1060-1~3, 1062, 1063-1, 1064-1, 1073-3, 1074-1, 1074-3, 1075-1, 1076-2, 1078, 1078-1~2, 1079, 1080, 1081-1~2, 1084, 1085, 1085-1~2, 1087-1~5, 1089-1~3, 1092, 1092-1~3, 1094, 1096-1~3, 1097-1~3, 1098, 1098-1, 1099-3~5, 1100-3, 1271-4~6, 1273-1~2, 1274-1~2, 1286, 1289-1~2, 1294, 1295, 1296, 1297-1~2, 1298-1~2, 1299, 1300-1~2, 1301-3~6, 1303-3~4, 1386-4~5, 1387-1~2, 1388, 1388-1~2, 1389-1~3, 1390-1~2, 1391-1~2, 1392, 1392-1, 1393-1, 1393-3~4, 1396-1~2, 1396-59~63, 1396-261, 1396-305, 1396-311, 1396-331, 1396-333, 1396-341~342, 1396-344~348, 1396-349~358, 1396-360, 1396-387~401, 1902-1~3, 1907-1, 1908, 1913-13, 1914, 2306-2307-11, 2307-13-2311, 2561, 2562, 대화동 산168-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주민자치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주민자치과장 신 건 국
	팀 장 성 명	자치행정팀장 박 종 민
	담 당 자 성명·전화	황 선 영 (031-8075-248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통반관할구역				통반관할구역			
동명 (행정동)	통	반	관할구역	동명 (행정동)	통	반	관할구역
홍도동	25	1	도내동 951 <u>원흥힐사이드파크</u> 상가 및 701호~1028호	홍도동	25	1	도내동 951 <u>힐사이드파크1차</u> 상가 및 701호~1028호
		2	도내동 951 <u>원흥힐사이드파크</u> 1101호~1428호			2	도내동 951 <u>힐사이드파크1차</u> 1101호~1428호
		3	도내동 951 <u>원흥힐사이드파크</u> 1501호~1828호			3	도내동 951 <u>힐사이드파크1차</u> 1501호~1828호
		4	도내동 951 <u>원흥힐사이드파크</u> 1901호~2320호			4	도내동 951 <u>힐사이드파크1차</u> 1901호~2320호
		5	도내동 951-1 <u>가람타워더퍼스트</u> 상가 및 701호~1025호			5	도내동 951-1 <u>가람타워오피스텔</u> 상가 및 701호~1025호
		6	도내동 951-1 <u>가람타워더퍼스트</u> 1101호~1525호			6	도내동 951-1 <u>가람타워오피스텔</u> 1101호~1525호
		7	도내동 951-1 <u>가람타워더퍼스트</u> 1601호~2025호			7	도내동 951-1 <u>가람타워오피스텔</u> 1601호~2025호
		8	도내동 951-1 <u>가람타워더퍼스트</u> 2101호~2525호			8	도내동 951-1 <u>가람타워오피스텔</u> 2101호~2525호
		9	도내동 중 952, <u>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u>			9	도내동 952
	26	1~4	(생략)		26	1~4	(현행과 같음)
		5	도내동 중 <u>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6, 977, 978, 979, 980, 981, 982</u> <u><신 설></u>			5	도내동 중 969, 970, 971, 976, 977, 978, 979, 980, 981, 982
					27	1	<u>도내동 967외 1필지 고양원흥츄시티 상가 및 701호~844호</u>
						2	<u>도내동 967외 1필지 고양원흥츄시티 901호~1144호</u>
						3	<u>도내동 967외 1필지 고양원흥츄시티 1201호~1444호</u>
						4	<u>도내동 967외 1필지 고양원흥츄시티 1501호~1744호</u>
						5	<u>도내동 967외 1필지 고양원흥츄시티 1801호~2044호</u>
						6	<u>도내동 967외 1필지 고양원흥츄시티 2101호~2344호</u>
						7	<u>도내동 중 964, 965, 966</u>
효자동			<u><신 설></u>		28	1	<u>도내동 954 원흥베네하임3차 상가 및 801호~1124호</u>
						2	<u>도내동 954 원흥베네하임3차 1201호~1527호</u>
						3	<u>도내동 954 원흥베네하임3차 1601호~1927호</u>
						4	<u>도내동 954 원흥베네하임3차 2001호~2427호</u>
						5	<u>도내동 중 953,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u>
					17	1	<u>고양지축 A-1블록 신혼희망타운 101동 1층~12층</u>
						2	<u>고양지축 A-1블록 신혼희망타운 101동 13층~24층</u>
						3	<u>고양지축 A-1블록 신혼희망타운 102동 1층~10층</u>
						4	<u>고양지축 A-1블록 신혼희망타운 102동 11층~21층</u>
						5	<u>고양지축 A-1블록 신혼희망타운 103동 1층~9층</u>
						6	<u>고양지축 A-1블록 신혼희망타운 103동 10층~19층</u>
						7	<u>고양지축 A-1블록 신혼희망타운 104동 1층~12층</u>
						8	<u>고양지축 A-1블록 신혼희망타운 104동 13층~24층</u>
						9	<u>고양지축 A-1블록 신혼희망타운 105동 1층~10층</u>
						10	<u>고양지축 A-1블록 신혼희망타운 105동 11층~21층</u>
						11	<u>고양지축 A-1블록 신혼희망타운 106동 1층~11층</u>
						12	<u>고양지축 A-1블록 신혼희망타운 106동 12층~24층</u>
						13	<u>고양지축 A-1블록 신혼희망타운 107동 1층~13층</u>
						14	<u>고양지축 A-1블록 신혼희망타운 107동 14층~24층</u>
						15	<u>고양지축 A-1블록 신혼희망타운 108동 1층~12층</u>
						16	<u>고양지축 A-1블록 신혼희망타운 108동 13층~24층</u>

현행				개정			
통반관할구역				통반관할구역			
동명 (행정동)	통	반	관할구역	동명 (행정동)	통	반	관할구역
삼송2동	24	1	원흥동 고양삼송 A11-2블록 행복주택 1001동 119호~542호	24	18	17	고양지축 A-1블록 신희희망타운 109동 1층~12층
		2	원흥동 고양삼송 A11-2블록 행복주택 1001동 601호~942호			18	고양지축 A-1블록 신희희망타운 109동 13층~23층
		3	원흥동 고양삼송 A11-2블록 행복주택 1002동 101호~526호			1	지축동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 101동 101호~2802호
		4	원흥동 고양삼송 A11-2블록 행복주택 1002동 601호~1026호			2	지축동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 101동 104호, 203호~2804호
		5	원흥동 고양삼송 A11-2블록 행복주택 1003동			3	지축동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 102동 101호~2802호
		6	원흥동 고양삼송 A11-2블록 행복주택 1004동			4	지축동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 102동 104호, 203호~2804호
		7	(생략)			5	지축동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 103동 101호~2802호
	25	1	원흥동 고양삼송 A24블록 행복주택 1301동		24	6	지축동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 103동 104호, 203호~2804호
		2	원흥동 고양삼송 A24블록 행복주택 1302동			1	원흥동 614 고양삼송엘에이치10단지아파트 1001동 119호~542호
		3	원흥동 고양삼송 A24블록 행복주택 1303동			2	원흥동 614 고양삼송엘에이치10단지아파트 1001동 601호~942호
		4	원흥동 고양삼송 A24블록 행복주택 1304동			3	원흥동 614 고양삼송엘에이치10단지아파트 1002동 101호~526호
		5	원흥동 고양삼송 A24블록 행복주택 1305동			4	원흥동 614 고양삼송엘에이치10단지아파트 1002동 601호~1026호
		6	원흥동 고양삼송 A24블록 행복주택 1306동			5	원흥동 614 고양삼송엘에이치10단지아파트 1003동
	3	7	원흥동 고양삼송 A24블록 행복주택 1307동		25	6	원흥동 614 고양삼송엘에이치10단지아파트 1004동
		8	원흥동 고양삼송 A24블록 행복주택 1308동			7	(현행과 같음)
		9	원흥동 고양삼송 A24블록 행복주택 1309동, 1310동			1	원흥동 600 고양삼송엘에이치13단지아파트 1301동
		10	원흥동 고양삼송 A24블록 행복주택 1311동, 1312동			2	원흥동 600 고양삼송엘에이치13단지아파트 1302동
		11	원흥동 고양삼송 A24블록 행복주택 1313동, 1314동			3	원흥동 600 고양삼송엘에이치13단지아파트 1303동
		12	원흥동 고양삼송 A24블록 행복주택 1315동, 1316동			4	원흥동 600 고양삼송엘에이치13단지아파트 1304동
		13	(생략)			5	원흥동 600 고양삼송엘에이치13단지아파트 1305동
능곡동	3	1	토당동 중 산41-2·3·4·5, 277-3·4·6·8·10·11·13·14·15·16·17·18·19·20·21·22·23, 278-2, 301, 574-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 27·28	능곡동	3	6	원흥동 600 고양삼송엘에이치13단지아파트 1306동
		2	토당동 중 279(대원연립), 278-5, 279-15·22, 280-7·10·11·13·15·16			7	원흥동 600 고양삼송엘에이치13단지아파트 1307동
		3	토당동 중 280-18·19·24(청라연립), 283, 283-1, 284, 284-3·4·5·7·9·13			8	원흥동 600 고양삼송엘에이치13단지아파트 1308동
		4	토당동 중 282-10·12, 283-8·14, 285-1, 287-2, 288-4, 289-4, 290-1·5·6·7·8·9·10, 291-1, 303, 304-2, 305-3, 336-13, 337			9	원흥동 600 고양삼송엘에이치13단지아파트 1309동, 1310동
		5	<신설>			10	원흥동 600 고양삼송엘에이치13단지아파트 1311동, 1312동
						11	원흥동 600 고양삼송 엘에이치 13단지 아파트 1313동, 1314동
						12	원흥동 600 고양삼송엘에이치13단지아파트 1315동, 1316동
						13	(현행과 같음)
						1	토당동 중 277-3·4·6·8·10·11·13·14·15·16·17·18·19·20·21·22·23, 278-2, 301, 574-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 27·28, 278-5, 282-10·12, 283-8·14, 285-1, 288-4, 289-4, 290-1·5·6·7·8·9·10
						2	토당동 중 55-4·5·6·11, 289-2·5·6·8·9·10·11, 290-12·13·14·15·16·17·18·19·20·21·22·23·24·25, 290-26(백제빌라)
						3	토당동 대곡역두산위브주상복합 201동
						4	토당동 대곡역두산위브주상복합 202동, 상가
						5	토당동 대곡역두산위브오피스텔, 상가

현행				개정			
통반관할구역				통반관할구역			
동명 (행정동)	통	반	관할구역	동명 (행정동)	통	반	관할구역
	4	1	토당동 중 <u>268-3·4·5·6·7·8·9·10·11·12·13·14·15·16·17·18·19·</u> <u>20·21·22·23·24·25·26·27·28, 734-1·2·3·4·5·6·7·8·9·</u> <u>10·11·12·13·14·15·16·17·18·19·20, 736-1·2·3·4·5·</u> <u>6·7·8·15·16·17·18·19·20·21·22·23·24·25·27, 739-1·</u> <u>2·3</u>		4	1	토당동 중 <u>734-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u> <u>736-1·2·3·4·5·6·7·8·15·16·17·18·19·20·21·22·23·24·25·27,</u> <u>739-1·2·3</u>
		2	토당동 중 <u>279-1, 30, 31(밀양다세대)</u>			2	토당동 중 <u>195,198, 582, 583, 584, 585, 586, 587, 588,</u> <u>588-1, 589-1, 591, 591-1, 592, 594, 603, 606,</u> <u>607, 608, 608-1, 609-1, 610-1, 611, 612,</u> <u>612-1, 613, 614, 615, 616, 624, 625, 626, 627,</u> <u>629, 629-1·2·3·4·5·6·7·8·9·10·11·13·14·15·74·75·77</u>
		3	토당동 중 <u>256, 256-2·5(금아빌라)</u>			3	토당동 중 <u>828, 828-1·2·3·4·5·6·7·8·9·10·11·12·13, 829,</u> <u>829-1·2·3·4·5·6·7·8·9·10·11·12, 830,</u> <u>830-1·2·3·4·5·6·7·8·9·10·11·12·13·14·15·16·17·18·19</u> <u>토당동 282-2번지 금호주상복합아파트 301~1203호,</u> <u>1301~1402호</u>
		4	토당동 중 <u>280-1·28·29·30·31·32·33·34·35(목화빌라), 281,</u> <u>282-21·22</u>			4	토당동 282-2번지 <u>금호주상복합아파트 301~1203호,</u> <u>1301~1402호</u>
		5	토당동 중 <u>280-38·40·41·42·43·44·45·46·47·48동(목화빌라)</u>			5	토당동 282-2번지 <u>금호주상복합아파트 304~1404호</u> <u>상가</u>
		6	토당동 중 <u>271-4(삼화파크 가나동)</u>			6	토당동 282-2번지 <u>금호주상복합아파트 306~1207호,</u> <u>1305~1408호</u>
		7	토당동 중 <u>271-4(삼화파크 다라동)</u>			7	<삭 제>
		8	토당동 282-2번지 <u>금호주상복합아파트 301~</u> <u>1203호, 1301~1402호</u>			8	<삭 제>
		9	토당동 282-2번지 <u>금호주상복합아파트 304~</u> <u>1404호, 상가</u>			9	<삭 제>
		10	토당동 282-2번지 <u>금호주상복합아파트 306~</u> <u>1207호, 1305~1408호</u>			10	<삭 제>
	5	1	토당동 <u>339-1·2·3·4, 338-1·2·3·5,</u> <u>340-1·2·3·4·5·6·7·8·9, 341-5, 343-1·2·3·4·5,</u> <u>195,198, 582, 583, 584, 585, 586, 587, 588,</u> <u>588-1, 589-1, 591, 591-1, 592, 594, 603,</u> <u>606, 607, 608, 608-1, 609-1, 610-1, 611,</u> <u>612, 612-1, 613, 614, 615, 616, 624, 625,</u> <u>626, 627, 629,</u> <u>629-1·2·3·4·5·6·7·8·9·10·11·13·14·15·74·75·77</u>		5	1	토당동 <u>339-1·2·3·4, 338-1·2·3·5, 340-1·2·3·4·5·6·7·8·9,</u> <u>341-5, 343-1·2·3·4·5</u>
		7	1 토당동 중 <u>251-5·12(히스아파트 가동)</u> 2 토당동 중 <u>251-5·12(히스아파트 나동)</u> 3 토당동 중 <u>251-5·12(히스아파트 다동)</u> 4 토당동 중 <u>251-5·12(히스아파트 라동 중 일부)</u> <u>101·102·103·104·105·106·107·201·202·203·205,</u> <u>206·207·301·302·303·305·306·307·401·402·403,</u> <u>405·406·407·501·502·503·505·506·507호</u> 5 토당동 중 <u>251-5·12(히스아파트 라동 중 일부)</u> <u>108·109·110·111·208·209·210·211·308·309·310,</u> <u>311·408·409·410·411·508·509·510·511호</u>		7	1	토당동 대곡역두산위브아파트 101동 2 토당동 대곡역두산위브아파트 102동 3 토당동 대곡역두산위브아파트 103동 4 토당동 대곡역두산위브아파트 104동 5 토당동 대곡역두산위브아파트 105동

현행				개정				
통 반 관 할 구 역				통 반 관 할 구 역				
동 명 (행정동)	통	반	관 할 구 역	동 명 (행정동)	통	반	관 할 구 역	
행신4동	19	6	토당동 중 251-5-12(허스아파트 마동 중 일부) 101-102-103-105-106-107-201-202-203-205-206- 207-301-302-303-305-306-307-401-402-403-405- 406-407-501-502-503-505-506-507호	행신4동	19	6	<삭 제>	
		7	토당동 중 251-5-12(허스아파트 마동 중 일부) 108-109-110-111-112-113-208-209-210-211-212- 213-308-309-310-311-312-313- 408-409-410-411- 412-413-508-509-510-511-512-513호			7	<삭 제>	
		8	토당동 중 251-39(허스아파트 바동)			8	<삭 제>	
		1	토당동 중 32, 34-1-3-6-7, 55-4-5-6-11, 289-2-5-6-8-9-10- 11, 290-12-13-14-15-16-17-18-19-20-21-22-23-24- 25, 290-26(백제빌라)			1	토당동 대곡역롯데캐슬엘클라씨 101동	
		2	토당동 중 288-1(능곡연립), 288-3			2	토당동 대곡역롯데캐슬엘클라씨 102동	
		3	토당동 중 289-17-18-19-20-22(우성빌라)			3	토당동 대곡역롯데캐슬엘클라씨 104동	
		4	토당동 중 287-1(삼화래저) <신 설> <신 설> <신 설>			4	토당동 대곡역롯데캐슬엘클라씨 105동	
		20	1			토당동 중 산37, 37-17, 73-1-4, 251-1-9-10-16-28, 132-2-3, 251-28(밀양주택), 251-63(청광상가), 130-2-3, 252-8, 산37-9, 산37-28	5	토당동 대곡역롯데캐슬엘클라씨 106동
			2			토당동 중 73-5-9-12-13-14-15-16-17-18(신성빌라)	6	토당동 대곡역롯데캐슬엘클라씨 107동
			3			토당동 중 251-4-31(대성빌라), 828, 828-1-2-3-4-5-6-7-8-9- 10-11-12-13, 829, 829-1-2-3-4-5-6-7-8-9-10-11-12, 830,830-1-2-3-4-5-6-7-8-9-10-11-12-13-14-15-16-17- 18-19	7	토당동 대곡역롯데캐슬엘클라씨 112동
			4			토당동 중 251-38(성광빌라)	20	1 토당동 중 251-16, 252-8
			5			<신 설>	2	토당동 대곡역롯데캐슬엘클라씨 103동
			6			<신 설>	3	토당동 대곡역롯데캐슬엘클라씨 108동
			12			1~2 (생 략) 3 행신동 1064 서정마을 1202동 103호~1510호 4 행신동 1074 서정마을 108동 101호~1408호 5 행신동 1074 서정마을 110동 101호~1506호 6 행신동 1074 서정마을 111동 201호~1504호 7 행신동 1074 서정마을 112동 101호~1506호 8 행신동 1074 서정마을 113동 101호~1504호	4	토당동 대곡역롯데캐슬엘클라씨 109동
	화전동	14	1~6 (생 략) <신 설>		5	토당동 대곡역롯데캐슬엘클라씨 110동		
		16	1 향동동 B-1블록 교양향동리슈빌 101동 2 향동동 B-1블록 교양향동리슈빌 102동 3 향동동 B-1블록 교양향동리슈빌 103동 4 향동동 B-1블록 교양향동리슈빌 104동 5 향동동 B-1블록 교양향동리슈빌 105동 6 향동동 B-1블록 교양향동리슈빌 106동 7 향동동 B-1블록 교양향동리슈빌 107동		6	토당동 대곡역롯데캐슬엘클라씨 111동, 상가		
			1~6 (현행과 같음) 7 행신동 1064 서정마을 1202동 103호~1510호		12	1~2 (현행과 같음) 3 행신동 1074 서정마을 108동 101호~1408호 4 행신동 1074 서정마을 110동 101호~1506호 5 행신동 1074 서정마을 111동 201호~1504호 6 행신동 1074 서정마을 112동 101호~1506호 7 행신동 1074 서정마을 113동 101호~1504호 <삭 제>		
			16		1 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01동 2 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02동 3 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03동 4 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04동 5 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05동 6 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06동 7 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07동	1~6 (현행과 같음) 7 행신동 1064 서정마을 1202동 103호~1510호		
			1		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01동	16	1 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01동	
			2		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02동	2	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02동	
			3		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03동	3	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03동	
			4		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04동	4	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04동	
		5	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05동		5	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05동		
		6	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06동		6	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06동		
	7	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07동	7		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07동			

현행				개정			
통반관할구역				통반관할구역			
동명 (행정동)	통	반	관할구역	동명 (행정동)	통	반	관할구역
	17	1	<u>향동동 B-1블록 고양향동리슈빌 108동</u>		17	1	<u>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08동</u>
		2	<u>향동동 B-1블록 고양향동리슈빌 109동</u>			2	<u>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09동</u>
		3	<u>향동동 B-1블록 고양향동리슈빌 110동</u>			3	<u>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10동</u>
		4	<u>향동동 B-1블록 고양향동리슈빌 111동</u>			4	<u>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11동</u>
		5	<u>향동동 B-1블록 고양향동리슈빌 112동</u>			5	<u>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12동</u>
		6	<u>향동동 B-1블록 고양향동리슈빌 113동</u>			6	<u>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13동</u>
		7	<u>향동동 B-1블록 고양향동리슈빌 114동</u>			7	<u>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14동</u>
		8	<u>향동동 B-1블록 고양향동리슈빌 115동</u>			8	<u>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15동</u>
		9	<u>향동동 B-1블록 고양향동리슈빌 116동</u>			9	<u>향동동 57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116동</u>
	18	1	<u>향동동 B-2블록 고양향동호반베르디움 201동 101호~2002호</u>		18	1	<u>향동동 571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2단지 201동 101호~2002호</u>
		2	<u>향동동 B-2블록 고양향동호반베르디움 202동 102호~2104호</u>			2	<u>향동동 571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2단지 202동 102호~2104호</u>
		3	<u>향동동 B-2블록 고양향동호반베르디움 203동 102호~1704호</u>			3	<u>향동동 571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2단지 203동 102호~1704호</u>
		4	<u>향동동 B-2블록 고양향동호반베르디움 204동 101호~1204호</u>			4	<u>향동동 571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2단지 204동 101호~1204호</u>
		5	<u>향동동 B-2블록 고양향동호반베르디움 205동 101호~1604호</u>			5	<u>향동동 571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2단지 205동 101호~1604호</u>
		6	<u>향동동 B-2블록 고양향동호반베르디움 206동 101호~2103호</u>			6	<u>향동동 571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2단지 206동 101호~2103호</u>
		7	<u>향동동 B-2블록 고양향동호반베르디움 207동 101호~2102호</u>			7	<u>향동동 571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2단지 207동 101호~2102호</u>
	19	1	<u>향동동 B-3블록 고양향동호반베르디움 301동 101호~2102호</u>		19	1	<u>향동동 557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3단지 301동 101호~2102호</u>
		2	<u>향동동 B-3블록 고양향동호반베르디움 302동 101호~2402호</u>			2	<u>향동동 557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3단지 302동 101호~2402호</u>
		3	<u>향동동 B-3블록 고양향동호반베르디움 303동 101호~2702호</u>			3	<u>향동동 557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3단지 303동 101호~2702호</u>
		4	<u>향동동 B-3블록 고양향동호반베르디움 304동 101호~2902호</u>			4	<u>향동동 557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3단지 304동 101호~2902호</u>
		5	<u>향동동 B-3블록 고양향동호반베르디움 305동 101호~2904호</u>			5	<u>향동동 557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3단지 305동 101호~2904호</u>
		6	<u>향동동 B-3블록 고양향동호반베르디움 306동 101호~2902호</u>			6	<u>향동동 557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3단지 306동 101호~2902호</u>
		7	<u>향동동 B-3블록 고양향동호반베르디움 307동 101호~2704호</u>			7	<u>향동동 557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3단지 307동 101호~2704호</u>
		8	<u>향동동 B-3블록 고양향동호반베르디움 308동 101호~2402호</u>			8	<u>향동동 557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3단지 308동 101호~2402호</u>
	20	1	<u>향동동 B-4블록 고양향동호반베르디움 401동 102호~2904호</u>		20	1	<u>향동동 552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4단지 401동 102호~2904호</u>
		2	<u>향동동 B-4블록 고양향동호반베르디움 402동 201호~2902호</u>			2	<u>향동동 552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4단지 402동 201호~2902호</u>
		3	<u>향동동 B-4블록 고양향동호반베르디움 403동 101호~2202호</u>			3	<u>향동동 552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4단지 403동 101호~2202호</u>
		4	<u>향동동 B-4블록 고양향동호반베르디움 404동 201호~2102호</u>			4	<u>향동동 552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4단지 404동 201호~2102호</u>
		5	<u>향동동 B-4블록 고양향동호반베르디움 405동 101호~2404호</u>			5	<u>향동동 552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4단지 405동 101호~2404호</u>
	21	1	<u>향동동 B-4블록 고양향동호반베르디움 406동 201호~2802호</u>		21	1	<u>향동동 552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4단지 406동 201호~2802호</u>
		2	<u>향동동 B-4블록 고양향동호반베르디움 407동 101호~2804호</u>			2	<u>향동동 552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4단지 407동 101호~2804호</u>
		3	<u>향동동 B-4블록 고양향동호반베르디움 408동 102호~2904호</u>			3	<u>향동동 552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4단지 408동 102호~2904호</u>
		4	<u>향동동 B-4블록 고양향동호반베르디움 409동 102호~2904호</u>			4	<u>향동동 552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4단지 409동 102호~2904호</u>
		5	<u>향동동 B-4블록 고양향동호반베르디움 410동 101호~2704호</u>			5	<u>향동동 552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4단지 410동 101호~2704호</u>
	22	1	<u>향동동 고양향동지구S-1블록 1001동 101호~2104호</u>		22	1	<u>향동동 421 디엘씨해링턴플레이스엔에이치에프 1001동 101호~2104호</u>
		2	<u>향동동 고양향동지구S-1블록 1002동 101호~1704호</u>			2	<u>향동동 421 디엘씨해링턴플레이스엔에이치에프 1002동 101호~1704호</u>

현행				개정			
통 반 관 할 구 역				통 반 관 할 구 역			
동 명 (행정동)	통	반	관 할 구 역	동 명 (행정동)	통	반	관 할 구 역
대덕동	23	3	<u>향동동 고양향동지구S-1블록 1003동 101호~2005호</u>	23	3	<u>향동동 421 디엡씨해링턴플레이스엔에이치에프 1003동 101호~2005호</u>	
		4	<u>향동동 고양향동지구S-1블록 1004동 101호~2106호</u>		4	<u>향동동 421 디엡씨해링턴플레이스엔에이치에프 1004동 101호~2106호</u>	
		5	<u>향동동 고양향동지구S-1블록 1005동 101호~2104호</u>		5	<u>향동동 421 디엡씨해링턴플레이스엔에이치에프 1005동 101호~2104호</u>	
		6	<u>향동동 고양향동지구S-1블록 1006동 101호~2105호</u>		6	<u>향동동 421 디엡씨해링턴플레이스엔에이치에프 1006동 101호~2105호</u>	
		7	<u>향동동 고양향동지구S-1블록 1007동 101호~2105호</u>		7	<u>향동동 421 디엡씨해링턴플레이스엔에이치에프 1007동 101호~2105호</u>	
		8	<u>향동동 고양향동지구S-1블록 1008동 101호~2105호</u>		8	<u>향동동 421 디엡씨해링턴플레이스엔에이치에프 1008동 101호~2105호</u>	
		1	<u>향동동 고양향동지구S-1블록 1009동 101호~2005호</u>		1	<u>향동동 421 디엡씨해링턴플레이스엔에이치에프 1009동 101호~2005호</u>	
		2	<u>향동동 고양향동지구S-1블록 1010동 101호~2105호</u>		2	<u>향동동 421 디엡씨해링턴플레이스엔에이치에프 1010동 101호~2105호</u>	
		3	<u>향동동 고양향동지구S-1블록 1011동 101호~2105호</u>		3	<u>향동동 421 디엡씨해링턴플레이스엔에이치에프 1011동 101호~2105호</u>	
		4	<u>향동동 고양향동지구S-1블록 1012동 101호~2105호</u>		4	<u>향동동 421 디엡씨해링턴플레이스엔에이치에프 1012동 101호~2105호</u>	
		5	<u>향동동 고양향동지구S-1블록 1013동 101호~2105호</u>		5	<u>향동동 421 디엡씨해링턴플레이스엔에이치에프 1013동 101호~2105호</u>	
		6	<u>향동동 고양향동지구S-1블록 1014동 101호~1706호</u>		6	<u>향동동 421 디엡씨해링턴플레이스엔에이치에프 1014동 101호~1706호</u>	
		7	<u>향동동 고양향동지구S-1블록 1015동 101호~2106호</u>		7	<u>향동동 421 디엡씨해링턴플레이스엔에이치에프 1015동 101호~2106호</u>	
	24	1	<u>향동동 고양향동지구S-2블록 201동 101호~2402호</u>		1	<u>향동동 517 디엡씨하우스디엡에이치에프 201동 101호~2402호</u>	
		2	<u>향동동 고양향동지구S-2블록 202동 101호~2905호</u>		2	<u>향동동 517 디엡씨하우스디엡에이치에프 202동 101호~2905호</u>	
		3	<u>향동동 고양향동지구S-2블록 203동 201호~2603호</u>		3	<u>향동동 517 디엡씨하우스디엡에이치에프 203동 201호~2603호</u>	
		4	<u>향동동 고양향동지구S-2블록 204동 201호~2502호</u>		4	<u>향동동 517 디엡씨하우스디엡에이치에프 204동 201호~2502호</u>	
	25	1	<u>향동동 A-1블록 고양향동지구A-1블록 101동 101호~2112호</u>	25	1	<u>향동동 407 고양향동엘에이치1단지 101동 101호~2112호</u>	
		2	<u>향동동 A-1블록 고양향동지구A-1블록 102동 101호~2108호</u>		2	<u>향동동 407 고양향동엘에이치1단지 102동 101호~2108호</u>	
		3	<u>향동동 A-1블록 고양향동지구A-1블록 103동 101호~2116호</u>		3	<u>향동동 407 고양향동엘에이치1단지 103동 101호~2116호</u>	
	28	1	<u>향동동 A-4블록 고양향동지구 A-4블록 401동</u>	28	1	<u>향동동 406 향동마을4단지 401동</u>	
		2	<u>향동동 A-4블록 고양향동지구 A-4블록 402동</u>		2	<u>향동동 406 향동마을4단지 402동</u>	
	29	1	<u>향동동 A-3블록 고양향동지구 A-3블록 301동</u>	29	1	<u>향동동 405 DMC 두산위브 더 퍼스트 301동</u>	
		2	<u>향동동 A-3블록 고양향동지구 A-3블록 302동</u>		2	<u>향동동 405 DMC 두산위브 더 퍼스트 302동</u>	
		3	<u>향동동 A-3블록 고양향동지구 A-3블록 303동</u>		3	<u>향동동 405 DMC 두산위브 더 퍼스트 303동</u>	
		4	<u>향동동 A-3블록 고양향동지구 A-3블록 304동</u>		4	<u>향동동 405 DMC 두산위브 더 퍼스트 304동</u>	
		5	<u>향동동 A-3블록 고양향동지구 A-3블록 305동</u>		5	<u>향동동 405 DMC 두산위브 더 퍼스트 305동</u>	
	30	1	<u>향동동 A-3블록 고양향동지구 A-3블록 306동</u>	30	1	<u>향동동 405 DMC 두산위브 더 퍼스트 306동</u>	
		2	<u>향동동 A-3블록 고양향동지구 A-3블록 307동</u>		2	<u>향동동 405 DMC 두산위브 더 퍼스트 307동</u>	
		3	<u>향동동 A-3블록 고양향동지구 A-3블록 308동</u>		3	<u>향동동 405 DMC 두산위브 더 퍼스트 308동</u>	
		4	<u>향동동 A-3블록 고양향동지구 A-3블록 309동</u>		4	<u>향동동 405 DMC 두산위브 더 퍼스트 309동</u>	
	대덕동	<신 설>		대덕동	16	1	<u>덕은동 DMC한강에일린의 뜰 101동 201호~2702호</u>
						2	<u>덕은동 DMC한강에일린의 뜰 101동 203호~2704호</u>
						3	<u>덕은동 DMC한강에일린의 뜰 102동 201호~2702호</u>
						4	<u>덕은동 DMC한강에일린의 뜰 102동 203호~2704호</u>
		<신 설>			17	1	<u>덕은동 덕은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101동 201호~2501호</u>
						2	<u>덕은동 덕은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101동 203호~2505호</u>
						3	<u>덕은동 덕은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102동 201호~2501호</u>
						4	<u>덕은동 덕은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103동 301호~2501호</u>
						5	<u>덕은동 덕은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104동 201호~2402호</u>

현행				개정			
통반관할구역				통반관할구역			
동명 (행정동)	통	반	관할구역	동명 (행정동)	통	반	관할구역
식사동	5	1~5	(생략)	식사동	5	1~5	(현행과 같음)
		6	814-35,36,40,41,50,52,74,86,112,113,114,115,117,118			6	식사동 중 814-35,36,40,41,50,52,74,86,112,113,114,115,117,118, 662-2·7·11·13·15·17·19·24·26, 663, 663-2, 665, 666, 815-2·4~6, 847-2
		7	(생략)			7	(현행과 같음)
		8	809-12,13,14,15,19,22,23,27,28,33,36,42,48,49, 51,52,54,56,57,66 793-1,2,4 산175 동국대병원				<삭제>
		9	662-2·7·11·13·15·17·19·24·26, 663, 663-2, 665, 666, 812-2·6 815-2·4~6, 817-1·2·4·5, 832, 832-3·7·8·11·20·28·29·36·41·43·44·46·48·54·55·58·59·68~74·77~81, 847-2, 1013-1, 1014-1, 1015, 1016-1, 1019, 1020, 1020-1, 1021, 1022, 1022-1, 1025, 1026, 1026-1, 1027, 1028, 1029, 1030, 1033, 1034, 1034-3, 1035, 1036, 1037, 1038, 1038-1, 1039, 1040, 1040-1, 1041, 1042, 1043, 1056-5, 1057				<삭제>
	6	1	식사동 중 825-10,11,12,42,54 832-4,5,11,15,38,57,58,59,61,63,66,67,75		6	1	식사동 중 751-2, 752-1~27, 753, 753-1~10, 754-3~6 755, 756, 757, 757-1~4, 762, 763, 763-1~7, 763-1~7, 769-1~14, 770-1~20, 777 777-1~3, 781, 781-1~5
		2	1006, 1006-1·2, 1007, 1008, 1009, 1009-1, 1013, 1014, 1016			2	740, 740-2~6, 743, 741, 741-5, 744, 745, 745-1~5, 746, 746-1~3, 747-1~16, 748, 748-2, 749-1~10, 758, 759, 760, 761
		3	751-2, 752-1~27, 753, 753-1~10, 754-3~6 755, 756, 757, 757-1~4, 762, 763, 763-1~7, 763-1~7, 769-1~14, 770-1~20, 777 777-1~3, 781, 781-1~5			3	727, 728-1~9, 729, 729-1~45, 730-1~10, 731, 732, 732-1~6
		4	740, 740-2~6, 743, 741, 741-5, 744, 745, 745-1~5, 746, 746-1~3, 747-1~16, 748, 748-2, 749-1~10, 758, 759, 760, 761			4	741, 741-1,3,6,7,8,10,11,12,13,14, 783, 783-1~6, 789, 789-1,2,8,15, 790-2,4,5,7, 산184, 산182-1
		5	727, 728-1~9, 729, 729-1~45, 730-1~10, 731, 732, 732-1~6			5	716, 716-7,8,16,17,23,45,51 1481, 1483(학교), 1484, 1484-1,2,3, 1485, 1485-1,2,3, 1485(공원), 1478, 1479(공원), 1477(학교)
	11	6	741, 741-1,3,6,7,8,10,11,12,13,14, 783, 783-1~6, 789, 789-1,2,8,15, 790-2,4,5,7, 산184, 산182-1		6	6	719, 720, 721, 721-1,5,6,7,10,13,14, 722, 722-2,5,7 산160-1, 산160-2,3,8,19 <삭제>
		7	716, 716-7,8,16,17,23,45,51 1481, 1483(학교), 1484, 1484-1,2,3, 1485, 1485-1,2,3, 1485(공원), 1478, 1479(공원), 1477(학교)				<삭제>
		8	719, 720, 721, 721-1,5,6,7,10,13,14, 722, 722-2,5,7 산160-1, 산160-2,3,8,19				<삭제>
		11	1~3 (생략)		11	1~3	(현행과 같음)
			<신설>			4	식사2지구 4블럭, 12블럭
	23	1~6	(생략)		23	1~6	(현행과 같음)
		7	식사자이2지구 2블럭 201동 102호~3003호				<삭제>
		8	식사자이2지구 2블럭 202동 102호~3204호				<삭제>

현행				개정			
통반관할구역				통반관할구역			
동명 (행정동)	통	반	관할구역	동명 (행정동)	통	반	관할구역
고봉동	13	9	<u>식사자이2지구 2블럭 203동 102호~3205호</u>				<삭 제>
		10	<u>식사자이2지구 2블럭 204동 102호~3204호</u>				<삭 제>
		11	<u>식사자이2지구 2블럭 205동 102호~3205호</u>				<삭 제>
		12	<u>식사자이2지구 2블럭 206동 101호~2804호</u>				<삭 제>
		13	<u>식사자이2지구 2블럭 207동 101호~3205호</u>				<삭 제>
		14	<u>식사자이2지구 2블럭 208동 101호~3205호</u>				<삭 제>
		15	<u>식사자이2지구 2블럭 209동 101호~3205호</u>				<삭 제>
		16	<u>식사자이2지구 2블럭 210동 210호~2002호</u>				<삭 제>
		17	<u>식사자이2지구 3블럭</u>				<삭 제>
			<신 설>	24	1	<u>식사자이2지구 2블럭 201동 102호~3003호</u>	
					2	<u>식사자이2지구 2블럭 202동 102호~3204호</u>	
					3	<u>식사자이2지구 2블럭 203동 102호~3205호</u>	
					4	<u>식사자이2지구 2블럭 204동 102호~3204호</u>	
					5	<u>식사자이2지구 2블럭 205동 102호~3205호</u>	
			<신 설>	25	1	<u>식사자이2지구 2블럭 206동 101호~2804호</u>	
					2	<u>식사자이2지구 2블럭 207동 101호~3205호</u>	
					3	<u>식사자이2지구 2블럭 208동 101호~3205호</u>	
					4	<u>식사자이2지구 2블럭 209동 101호~3205호</u>	
					5	<u>식사자이2지구 2블럭 210동 210호~2002호</u>	
					6	<u>식사자이2지구 2블럭 삼가동</u>	
					6	<u>식사자이2지구 3블럭</u>	
			<신 설>	26	1	<u>식사동 중 809-12,13,14,15,19,22,23,27,28,33,36,42,48,49,51,52, 54,56,57,66 793-1,2,4 산175 동국대병원</u>	
					2	<u>식사동 중 812-2·6 817-1·2·4·5, 832, 832-3·7·8·20·28·29·36·41·43·44·46·48·54·55·68~74 ·75·77~81, 1013-1, 1014-1, 1015, 1016-1, 1019, 1020, 1020-1, 1021, 1022, 1022-1, 1025, 1026, 1026-1, 1027, 1028, 1029, 1030, 1033, 1034, 1034-3, 1035, 1036, 1037, 1038, 1038-1, 1039, 1040, 1040-1, 1041, 1042, 1043, 1056-5, 1057</u>	
					3	<u>식사동 중 825-10,11,12,42,54 832-4,5,15,38,57,58,59,61,63,66,67</u>	
					4	<u>식사동 중 1006, 1006-1·2, 1007, 1008, 1009, 1009-1, 1013, 1014, 1016</u>	
			<신 설>	27	1	<u>식사2지구 5블럭 베네하임</u>	
					2	<u>식사2지구 6블럭, 7블럭, 8블럭, 9블럭, 10블럭, 11블럭, 12블럭</u>	
고봉동	13	1	<u>성석동 산205, 산207, 산208, 1305-4·7·9·24, 1306, 1329~1334, 1336, 1337, 1338-2, 1457~1463, 1493-1·2, 1526-10, 1528, 2140, 2142~2146, 2148~2153, 2156~2176</u>	성석동	13	1	<u>성석동 1342~1345, 1370, 1370-1~6, 1372, 1400-1~16, 1401-8, 1402, 1405~1406, 1408, 1409, 1410-1·2·3·6·7·10·11, 1413~1415, 2115~2118, 2120~2125, 2154, 2154-1~5, 2184~2194</u>

현행				개정					
통 반 관 할 구 역				통 반 관 할 구 역					
동 명 (행정동)	통	반	관 할 구 역	동 명 (행정동)	통	반	관 할 구 역		
일산1동	21	2	<u>성석동 산203, 1338, 1342~1345, 1374~1434, 1436~1449, 1452~1456, 1498-2, 2124~2139, 2178~2186</u>	일산1동	21	2	<u>성석동 산200, 1161, 1164~1167, 1168, 1168-1~10, 1168-14~16, 1168-20, 1170~1174, 1176, 1178, 1180, 1182~1185, 1186-1~3·5·7·8, 1187-1~5, 1188~1190, 1193~1201, 1364~1366, 1366-1~5, 1367, 1374-1·2·6~14, 1375, 1375-1~4, 1376, 1377, 1377-1·2·4, 1378, 1378-1·2, 1379, 1379-1~3, 1380-1·3~5·8, 1381, 1381-1~4, 1382, 1383, 1383-2, 1384, 1385, 1385-1~2, 1386, 1387, 1387-1, 1388, 1389, 1389-2·3, 1390, 1391-1~4, 1393, 1393-1·3, 1394, 1394-1~3, 1395-1·3~8·10·13·15·17~19·22·23, 1396, 1397-1~3, 1398-1·2, 1399-1~5, 1401-1~6, 1402~1404, 1411-1~4, 1412, 1493-6, 1513, 1521, 1849~1866, 1871~1876, 1883~1887, 1890~1896, 1899, 2108~2114</u>		
		3	<u>성석동 산200, 산202, 산203-4, 1168-4·14·15·16·20, 1175~1181, 1186-2·5, 1187-1, 1366-3, 1367~1370, 1372, 1374~1404, 1493, 1521, 2115~2122, 2187~2194</u>			<삭 제>			
		4	<u>성석동 1161, 1164~1167, 1168, 1168-1~3·5~10, 1170~1174, 1182~1185, 1186-1·3·7·8, 1187-2~5, 1188~1190, 1193~1201, 1364~1366, 1366-1·4·5, 1493-6, 1513, 1849~1866, 1871~1876, 1883~1887, 1890~1896, 1899, 2108~2114</u>			<삭 제>			
		<신 설>				29	1	<u>성석동 산203, 산205-9, 산207-9~11·13·15·17·18, 산208-3·4·10·11, 1305-4·7·23·24, 1306, 1329~1334, 1336, 1337, 1338-2, 1424-2, 1424~1429, 1432-1·2·4, 1434, 1436~1441, 1442-1·4~8, 1443~1445, 1445-1·2·6·10~12, 1446-1·3·5·7·9, 1457~1463, 1493-1·2, 1526-10, 1528, 2140, 2141, 2141-1, 2142, 2142-1·2, 2143, 2143-1, 2144, 2144-1, 2145, 2146, 2147, 2148-1·2·3, 2149, 2149-1~3, 2150, 2150-1~3, 2151~2153, 2148~2153, 2155, 2155-1, 2156~2163, 2164-2, 2165-2, 2166~2172, 2174-2, 2174~2176</u>	
		<신 설>						2	<u>성석동 1338, 1338-3·5·6, 1421, 1447-1, 1447~1449, 1447-1, 1449, 1452, 1452-1·2·4·5~7, 1453, 1454-2·3, 1455, 1455-2·3·7·8·10~12·14, 1456, 1456-2~5·9~11, 2126~2139, 2178~2186</u>
		1	<u>일산동 937-31 동문3차 301동 101~1802호</u>					1	<u>일산동 973-31 동문3차 301동 101~1802호</u>
		2	<u>〃 301동 103~1404호, 105~1006호</u>					2	<u>일산동 973-31 동문3차 301동 103~1404호, 105~1006호</u>
		일산2동	21			3	<u>〃 302동 101~1005호, 3차 상가</u>	3	<u>일산동 973-31 동문3차 302동 101~1005호, 3차 상가</u>
						4	<u>〃 302동 1101~2005호</u>	4	<u>일산동 973-31 동문3차 302동 1101~2005호</u>
						5	<u>〃 302동 106~2007호, 974-3.4</u>	5	<u>일산동 973-31 동문3차 302동 106~2007호</u>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24	1	<u>일산동 e편한세상어반스카이 101동 301~2602호</u>			
<신 설>					2	<u>일산동 e편한세상어반스카이 101동 2701~4902호</u>			
<신 설>					3	<u>일산동 e편한세상어반스카이 101동 303~2604호</u>			
<신 설>					4	<u>일산동 e편한세상어반스카이 101동 2703~4904호</u>			
<신 설>				5	<u>일산동 e편한세상어반스카이 102동 301~2602호</u>				
<신 설>				6	<u>일산동 e편한세상어반스카이 102동 2701~4902호</u>				
<신 설>		7	<u>일산동 e편한세상어반스카이 102동 303~2604호</u>						
<신 설>		8	<u>일산동 e편한세상어반스카이 102동 2703~4904호</u>						
<신 설>		25	1	<u>일산동 e편한세상어반스카이 103동 301~2602호</u>					
<신 설>									

현행				개정					
통반관할구역				통반관할구역					
동명 (행정동)	통	반	관할구역	동명 (행정동)	통	반	관할구역		
일산3동	4	1~4	(생략)	일산3동	4	2	<u>일산동 e편한세상어반스카이 103동 2701~4902호</u>		
		5	<u>후곡마을 405동</u>			3	<u>일산동 e편한세상어반스카이 103동 303~2604호</u>		
		<u>일산동 1063.1063-1.1064.1064-1:2:3:4:5(상가)</u>				4	<u>일산동 e편한세상어반스카이 103동 2703~4904호</u>		
		6	<u>후곡마을 406동</u>			5	<u>일산동 e편한세상어반스카이 104동 301~2602호</u>		
		7	<u>후곡마을 407동</u>			6	<u>일산동 e편한세상어반스카이 104동 2701~4902호</u>		
		8	<u>후곡마을 408동</u>			7	<u>일산동 e편한세상어반스카이 104동 303~2605호</u>		
						8	<u>일산동 e편한세상어반스카이 104동 2703~4905호</u>		
		18	1~5			(생략)	(현행과 같음)		<u><삭제></u>
	6	<u>일산동 1077 후곡마을 1506동 일산동 1078.</u>	18		1~5	(현행과 같음)		<u><삭제></u>	
	7	<u>1078-1, 1079, 1079-1:2:3:4:5(상가)</u>				<u><삭제></u>			
	8	<u>일산동 1077 후곡마을 1507동</u>				<u><삭제></u>			
	9	<u>일산동 1077 후곡마을 1508동</u>				<u><삭제></u>			
	10	<u>일산동 1077 후곡마을 1509동</u>				<u><삭제></u>			
	<u>1510동</u>					<u><삭제></u>			
<u><신설></u>									
<u><신설></u>		24	1	<u>후곡마을 405동</u>					
			2	<u>일산동 1063.1063-1.1064.1064-1:2:3:4:5(상가)</u>					
			3	<u>후곡마을 406동</u>					
			4	<u>후곡마을 407동</u>					
			5	<u>후곡마을 408동</u>					
		25	1	<u>일산동 1077 후곡마을 1506동 일산동 1078.</u>					
			2	<u>1078-1, 1079, 1079-1:2:3:4:5(상가)</u>					
			3	<u>일산동 1077 후곡마을 1507동</u>					
			4	<u>일산동 1077 후곡마을 1508동</u>					
			5	<u>일산동 1077 후곡마을 1509동</u>					
			6	<u>일산동 1077 후곡마을 1510동</u>					

현행				개정			
통반관할구역				통반관할구역			
동명 (행정동)	통	반	관할구역	동명 (행정동)	통	반	관할구역
대화동	29	9	대화동 908-1, 927-1, 946-2, 948-2, 949-2, 950-2, 968-2, 969-2, 970-2, 970-4, 975-3, 985-2, 986-2, 987-2, 988-5, 994-2, 995-1, 997-3, 999-2, 1000-2, 1030-2~3, 1031-2~3, 1032-3, 1033-2~4, 1034-2~4, 1039-2~4, 1049, 1049-1~3, 1050-1~167, 1051, 1051-1~4, 1052-2, 1053-1~5, 1054-1, 1054-4, 1055-1~6, 1058-2, 1059-1~3, 1060-1~3, 1062, 1063-1, 1064-1, 1073-3, 1074-1, 1074-3, 1075-1, 1076-2, 1078, 1078-1~2, 1079, 1080, 1081-1~2, 1084, 1085, 1085-1~2, 1087-1~5, 1089-1~3, 1092, 1092-1~3, 1094, 1096-1~3, 1097-1~3, 1098, 1098-1, 1099-3~5, 1100-3, 1271-4~6, 1273-1~2, 1274-1~2, 1286, 1289-1~2, 1294, 1295, 1296, 1297-1~2, 1298-1~2, 1299, 1300-1~2, 1301-3~6, 1303-3~4, 1386-4~5, 1387-1~2, 1388, 1388-1~2, 1389-1~3, 1390-1~2, 1391-1~2, 1392, 1392-1, 1393-1, 1393-3~4, 1396-1~2, 1396-59~63, 1396-261, 1396-305, 1396-311, 1396-331, 1396-333, 1396-341~342, 1396-344~348, 1396-349~358, 1396-360, 1396-387~401, 1902-1~3, 1907-1, 1908, 1913-13, 1914, <u>2306~2311</u> , 2561, 2562, 대화동 산168-2	대화동	29	9	대화동 908-1, 927-1, 946-2, 948-2, 949-2, 950-2, 968-2, 969-2, 970-2, 970-4, 975-3, 985-2, 986-2, 987-2, 988-5, 994-2, 995-1, 997-3, 999-2, 1000-2, 1030-2~3, 1031-2~3, 1032-3, 1033-2~4, 1034-2~4, 1039-2~4, 1049, 1049-1~3, 1050-1~167, 1051, 1051-1~4, 1052-2, 1053-1~5, 1054-1, 1054-4, 1055-1~6, 1058-2, 1059-1~3, 1060-1~3, 1062, 1063-1, 1064-1, 1073-3, 1074-1, 1074-3, 1075-1, 1076-2, 1078, 1078-1~2, 1079, 1080, 1081-1~2, 1084, 1085, 1085-1~2, 1087-1~5, 1089-1~3, 1092, 1092-1~3, 1094, 1096-1~3, 1097-1~3, 1098, 1098-1, 1099-3~5, 1100-3, 1271-4~6, 1273-1~2, 1274-1~2, 1286, 1289-1~2, 1294, 1295, 1296, 1297-1~2, 1298-1~2, 1299, 1300-1~2, 1301-3~6, 1303-3~4, 1386-4~5, 1387-1~2, 1388, 1388-1~2, 1389-1~3, 1390-1~2, 1391-1~2, 1392, 1392-1, 1393-1, 1393-3~4, 1396-1~2, 1396-59~63, 1396-261, 1396-305, 1396-311, 1396-331, 1396-333, 1396-341~342, 1396-344~348, 1396-349~358, 1396-360, 1396-387~401, 1902-1~3, 1907-1, 1908, 1913-13, 1914, <u>2306~2307-11</u> , <u>2307-13~2311</u> , 2561, 2562, 대화동 산168-2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제안이유

- 주택 신축 및 인구 증가 등 지역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통·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신규주택 입주 및 오류지번 정정에 따른 통·반 관할구역을 조정함(별표).
 - 조정내역 : 16개통 72개반 증설
 - ※ (조정 전) 1,082통 6,817반 → (조정 후) 1,098통 6,889반

구 분		조정 전		증감		조정 후		통·반 변경사유
		통	반	통	반	통	반	
합 계				16	72			※ (조정 전) 1,082통 6,817반 → (조정 후) 1,098통 6,889반
1	홍도동	26	175	2	12	28	187	○ 2개 통, 12개 반 증설, 지번조정, 공동주택 명칭 변경 - 25통 내 아파트 명 건축물대장과 일치 및 26통 5반 지번조정 - 고양원흥중시디, 원흥베네하임 3차 입주예정에 따른 통·반 신설
2	효자동	16	142	2	24	18	166	○ 2개 통, 24개 반 증설 - 고양지축 A-1블록 신촌희망타운 및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 입주예정
3	삼송2동	25	187	-	-	25	187	○ 공동주택 명칭 변경 - 24통, 25통 내 아파트 명칭 및 지번 건축물대장과 일치
4	능곡동	28	182	-	-1	28	181	○ 1개 반 감소, 지번 조정 - 두산위브, 롯데캐슬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입주에 따른 통·반 조정
5	행신4동	21	134	-	-	21	134	○ 관할구역 조정 - 효율적인 통·반관리를 위해 12통, 14통 관할구역 조정
6	화전동	30	167	-	-	30	167	○ 공동주택 명칭 변경 - 16통부터 30통까지의 아파트 명칭 및 지번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도록 변경
7	대덕동	15	112	3	18	18	130	○ 3개 통, 18개 반 증설 - 덕은지구 공동주택 입주예정에 따른 통·반 신설
8	식사동	23	147	4	3	27	150	○ 4개 통, 3개 반 증설 - 효율적인 통·반관리를 위해 행정구역 조정 - 중복지번 정정 및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 신설
9	고봉동	28	123	1	-	29	123	○ 1개 통 신설, 관할구역 조정 - 효율적인 통·반관리를 위해 13통 관할구역 조정, 29통 신설
10	일산1동	30	233	-	-	30	233	○ 오류지번 정정 - 21통의 오류지번 정정
11	일산2동	23	162	2	16	25	178	○ 2개 통, 16개 반 증설 - e-편한세상어반스카이 공동주택 입주예정에 따른 통·반 신설
12	일산3동	23	168	2	-	25	168	○ 2개 통 증설 - 세대수 과밀 공동주택 행정구역 조정으로 통 신설
13	대화동	39	304	-	-	39	304	○ 오류지번 정정 - 29통의 중복지번 정정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2년 11월 8일

고양시 규칙 제1150호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①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재정확충기여자를 지방세유공자로 추천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1부

제3조(선정 등) ① 고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

원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심의 요구를 받은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별표의 선정심사기준표에 따라 지방세유공자 선정 대상자를 심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방세유공자 선정 의결서에 따라 지방세유공자를 선정한다.

③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선정한 지방세유공자가 선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인증서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중 지방세유공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 인증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2.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방세유공자 인증 자동차 스티커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재정확충기여자 및 세정시책유공자 중 지방세유공자로 선정된 자에게 수여할 수 있는 표창장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표창장
2.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감사패

제5조(기록보존)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방세유공자 선정기록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고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및 「고양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되거나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세유공자” 로 한다.

소관부서		세정과
입안자	과장 성명	세정과장 김영남
	팀장 성명	세정팀장 차형수
	담당자 성명·전화	정희영 031-8075-2212

[별표]

선 정 심 사 기 준 표 (제3조제2항 관련)

1. 재정확충기여자의 경우

<u>성명(단체·법인명) :</u>				
구 분	평 가 항 목	평가 기간	배점	득점
계			100	
납세규모	○ 개인 및 단체 : 연 3천만원 이상 - 기본 20점 + 500만원 초과할 때마다 1점 추가 ○ 법인 : 연 1억원 이상 - 기본 20점 + 5천만원 초과할 때마다 1점 추가	1년간	40	
채납유무	○ 1월 1일 기준 최근 5년 이상 해마다 납부건수가 5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경우 - 5년을 소급하여 채납이 있는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	5년간	30	
세목수	○ 세목당 1점	3년간	10	
납입실적	○ 납입기간 내 납부 (기간초과 시 세목당 1점씩 감점)	3년간	10	
납세기여도	○ 세무조사 시 추징금이 없는 경우 - 추징이 있을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	5년간	10	

※ 재정확충기여자 선정대상은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상 계속하여 해마다 납부건수 5건 이상(등록면허세, 개인분 주민세, 레저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제외)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해야 하며, 5년간을 소급하여 항목별로 평가한다.

2. 세정시책유공자의 경우

<u>성명 :</u>				
구 분	평 가 항 목	평가 기간	배점	득점
계			100	
세정시책	○ 세정시책 운영의 효율성 ○ 세정시책 대내외 홍보 효과		30	
재정확충 기여	○ 신세원 발굴 ○ 세정시책 운영에 따른 재정확충 기여 여부		30	
제도개선	○ 법령 등 제도개선		20	
대내외 홍보 기여도	○ 세정운영 평가 수상 여부 ○ 각종 연찬회 등 수상 여부		20	

추천서

재정확충기여자 인적사항	성명 (단체·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등)	
	주소 (소재지)	
〔공적개요〕		
위 개인·단체·법인을 년도 지방세유공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 구청장		
고양시장 귀하		
직인		
〔붙임서류〕		
1. 공적조서 1부		

공 적 조 서

(앞면)

성 명 (단체·법인명)	(한 자)		성별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등)				
주 소 (소 재 지)				
전국 지방세 체납 사실조사 여부				
공 적 요 지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뒷면)

주요 경력 사항	
연월일	경력사항 상세
과거 포상 기록	
연월일	이 력
공 적 사 항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의결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재정확충기여자, 세정시책유공자 후보자 중 00명을 「0000년 고양시 지방세유공자」로 선정합니다.

0000. 00. 00.

고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 원 장	(서명 또는 날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심사위원	(서명 또는 날인)	심사위원	(서명 또는 날인)
심사위원	(서명 또는 날인)	심사위원	(서명 또는 날인)
심사위원	(서명 또는 날인)	심사위원	(서명 또는 날인)
심사위원	(서명 또는 날인)	심사위원	(서명 또는 날인)
심사위원	(서명 또는 날인)		

<세부내역 별첨>

<개인 또는 단체>

연번	추천 구청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비고

<법인>

연번	추천 구청	법인명	대표자	비고

인 증 서

지방세유공자 인증서

고유번호 :

성명(단체·법인명) :

유효기간 :

고양시장

직인

지방세유공자 인증 자동차 스티커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인증

차량번호 :
유효기간 : ~

위 자동차는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시 공용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이 면제된 자동차입니다.

0000. 0. 0.
고양시장 직인

※ 규격은 시안을 보고 결정

규격 제1안 10cm × 8cm

제2안 8cm × 5cm

제3안 디자인 추천

표 창 장

제 호

표 창 장

성 명 (단체 · 법인명)

귀하께서는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여
고양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년도 고양시 지방세유공자로 선정
하여 표창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 ○ ○ ○

직인

감 사 패

제 호

감 사 패

성 명(단체·법인명)

주 소(소재지)

귀하께서는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여 고양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으므로 그 공을 기리고자 ○○○○년도
고양시 지방세유공자로 선정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고양시장 ○ ○ ○

직인

중요사항 대비표

현행	개정
<u>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u> <신 설> <u>제2조(성실납세자의 선정 및 지원)</u> 성실납세자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u>제4조(성실납세자 선정통보 및 증명)</u>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선정사실을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성실납세자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자 확인서 발급은 성실납세자 선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발급한다.	<u>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u> <u>제2조(추천)</u> ①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재정확충기여자를 지방세유공자로 추천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1부 <u>제3조(선정 등)</u> ① 고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심의 요구를 받은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별표의 선정심사기준표에 따라 지방세유공자 선정 대상자를 심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방세유공자 선정 의결서에 따라 지방세유공자를 선정한다. ③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선정한 지방세유공자가 선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u>제4조(인증서 등)</u>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중 지방세유공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 인증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2.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방세유공자 인증 자동차 스티커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재정확충

현행	개정
<u>제5조(사후관리)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성실납세자 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전자문서로 보관 및 관리한다. 이 경우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한 상태이어야 한다.</u>	<u>기여자 및 세정시책유공자 중 지방세 유공자로 선정된 자에게 수여할 수 있는 표창장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표창장</u> <u>2.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감사패</u> <u>제5조(기록보존)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방세유공자 선정기록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u>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제안이유

- 개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규칙의 제명을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 나. 구청장이 재정확충기여자를 지방세유공자로 추천할 때 시장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하여 규정함(제2조).
- 다. 지방세유공자 선정 인원 및 위원회에서 지방세유공자를 선정할 때 필요한 선정심사기준표 등 지방세유공자 선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제3조).
- 라. 지방세유공자에게 발급하는 인증서 등의 서식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2년 11월 8일

고양시 규칙 제1151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시장”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신청)”을 “(사용허가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산정조서”를 “계산조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사용허가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를 “(행정재산 등의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사용·수익허가서”를 “사용허가서”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 정리부)”를 “(사용허가 정리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산정조서”를 “계산조서”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변상금 분할납부)”를 “(변상금 납부 등)”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따라 변상금 분할납부하고 자 할 경우에는”을 “따른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례 제59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 서식에 따른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4항 중 “영 제29조제4항제3호”를 “영 제29조제5항제3호”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7호서식 및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재산관리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재산관리과장 김 학 배
	팀 장 성 명	재산관리팀장 김 태 일
	담 당 자 성명·전화	임 형 애 031-8075-2893

() 사 용 허 가 ᄇ 공유재산 () 대 부 신청서 () 매 수 ᄊ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신청내용								
재 산 의 표 시				신청 면적 (㎡)	사용 용도 (목적)	사용자 · 대부자 또는 매수자	대부기간	비 고
소 재 지	지 목	지적 (㎡)	일단 면적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대부()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공유재산 (유 상 무 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

신청인 주소 :

성명 :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재산의(유상·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첨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고 양 시 장

인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변상금()매각대금]				분할납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신청내용									
재 산 의 표 시					신청면적 (㎡)	신 청 사 유	분 납 형 식	비 고	
소 재 지		지목	지적(㎡)						
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									
							연 ()회		
							연 ()회		
							연 ()회		
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									
							()년 ()회		
							()년 ()회		
							()년 ()회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24조, 제28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 ()대 부 료] [()변상금 ()매각대금] 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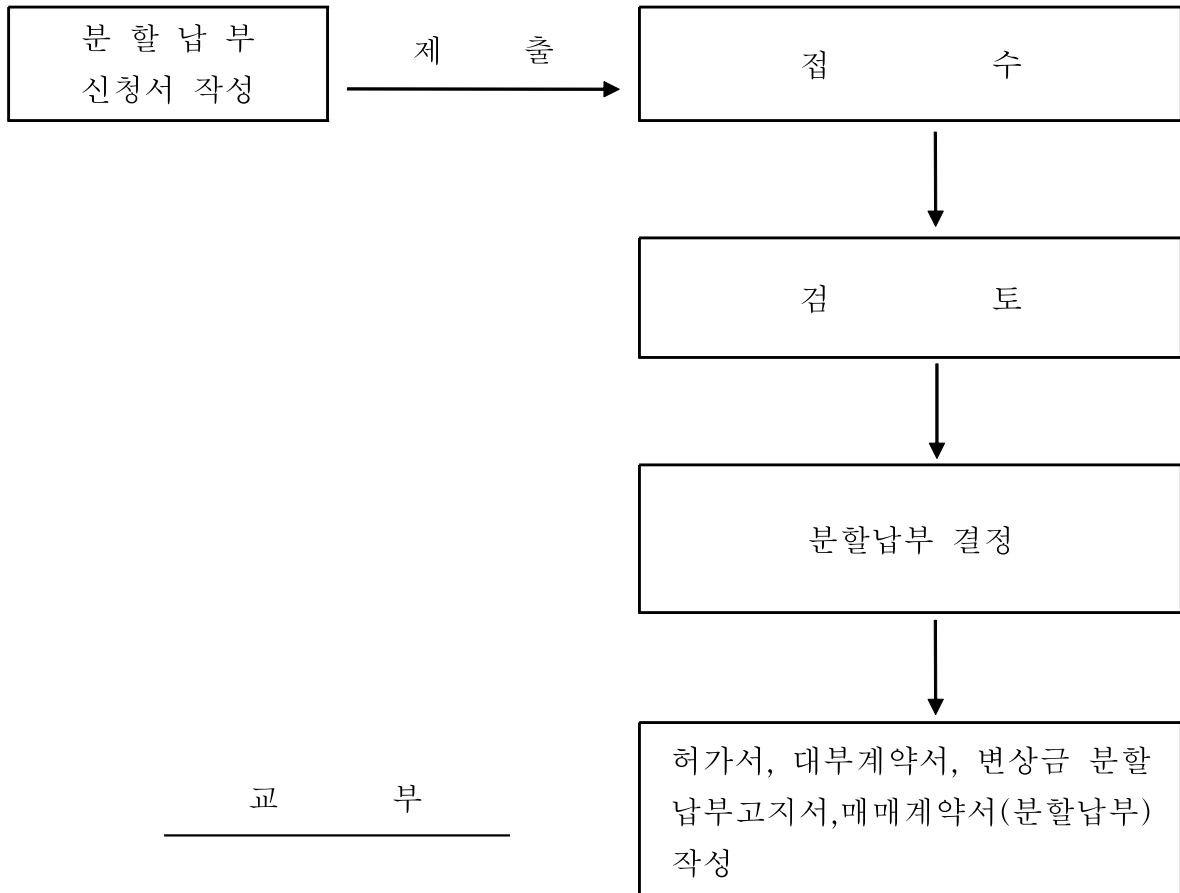
(뒷면)

※ 사용료(대부료) :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가능

※ 변 상 금 :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 가능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고 양 시 청



[별지 제10호의2서식]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 및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내역

부과대상 (부과기간)	점유면적(㎡)	변상금(원)	징수유예기간(월)	유예신청사유

붙임 :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사유에 대한 입증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고양시장 귀하

유의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
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						
대 상 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부과내용						
재산의 표시			점유 면적 (㎡)	부과기간	예상변상금 (원)	비고
소 재 지	지목	지적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8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불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불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고 양 시 장 귀 하

[별지 제20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성 명

귀하

고 양 시 장

인

재산의 표시 평가액

재산소재지	지 번	재산종별	총수량	대부수량	평가액	비고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3호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단서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 하여야 한다.
2. 2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시장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4조(관리책임) ① (생략) 1. (생략) 2. 사용관리(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 관리위탁 등) 3.~4. (생략) ②~⑤ (생략) ⑥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4조(관리책임)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사용허가----- ----- 3.~4. (현행과 같음) ②~⑤ (현행과 같음) ⑥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 -----.
제10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6. (생략) ② (생략)	제10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 ----- ----- -----. 1.~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증감이동보고) ①~② (생략)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에 따른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증감이동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 -----.
제16조(사용·수익허가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	제16조(사용허가신청) ① ----- -----사용허가----- ----- -----

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사용료 <u>산정조서</u> 3.~4. (생 략) 5. <u>사용·수익허가기간</u> 6. (생 략) ② 계속 <u>사용·수익허가</u>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u>사용·수익허가</u>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의 <u>사용·수익허가</u>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사용·수익허가 정리부) 조례 제20조에 따른 <u>사용·수익허가</u> 정리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대부신청) ① (생 략) 1. (생 략) 2. 대부료 <u>산정조서</u> 3.~6. (생 략) ② (생 략) 제28조(변상금 분할납부) 조례 제59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 분할 납부하고 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32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13조에 따른 <u>공유재산관리계획서</u>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 1. (현행과 같음) 2. ----<u>계산조서</u> 3.~4. (현행과 같음) 5. <u>사용허가 기간</u> 6. (현행과 같음) ② ----<u>사용허가</u>----- -----. ③ -----<u>사용허가</u>----- -----. 제17조(행정재산 등의 사용허가) ----- -----<u>사용허가서</u>----- -----. 제18조(사용허가 정리부) ----- -----<u>사용허가</u>----- -----. 제21조(대부신청)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계산조서</u> 3.~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변상금 납부 등) ① ----- ----<u>따른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u>----- -----. ② 조례 제59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삭 제>
---	---

제33조(공유재산의 처분) ①~③ (생 략)

④ 영 제29조제4항제3호 및 영 제38조 제1항제2호의 단서에 따른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다.

제33조(공유재산의 처분)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29조제5항제3호-----

-----.

현행										개정									
[별지 제6호서식]																			
()사용·수익허가 ㄱ 공유재산 ()대 부 신청서 ()매 수 ㄴ										사용·수익허가(대부)		처리기간 20일							
										처리기간									
										신규	갱신								
										감정유 15(21)일 감정무 5(10)일	3일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④전화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 면적 (㎡)	사용 용도 (목적)	사용자· 대부자 또는 매수자	대부기간	비 고											
소재지	지 목	지적 (㎡)	일단 면적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사 용 허 가 ㄱ 공유재산 ()대 부 신청서 ()매 수 ㄴ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④전화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 면적 (㎡)	사용 용도 (목적)	사용자· 대부자 또는 매수자	대부기간	비 고											
소재지	지 목	지적 (㎡)	일단 면적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대부()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서

재산의 표시 :

신청인 주소 :

성명 :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재산의(유상·무상) 사용
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고 양 시 장 ㉠

[별지 제7호서식]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

신청인 주소 :

성명 :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재산의(유상·무상) 사용
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첨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고 양 시 장 ㉠

[별지 제10호서식]

공유재산		〔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 〕		분할납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면적(m ²)	신청사유	분납형식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m ²)				
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						
					월 이내()회	
					월 이내()회	
					월 이내()회	
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						
					()년 분납	
					()년 분납	
					()년 분납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24조, 제28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 〕 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없음

[별지 제10호서식]

공유재산		〔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 〕		분할납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면적(m ²)	신청사유	분납형식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m ²)				
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						
					연 ()회	
					연 ()회	
					연 ()회	
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						
					()년 ()회	
					()년 ()회	
					()년 ()회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24조, 제28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 〕 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없음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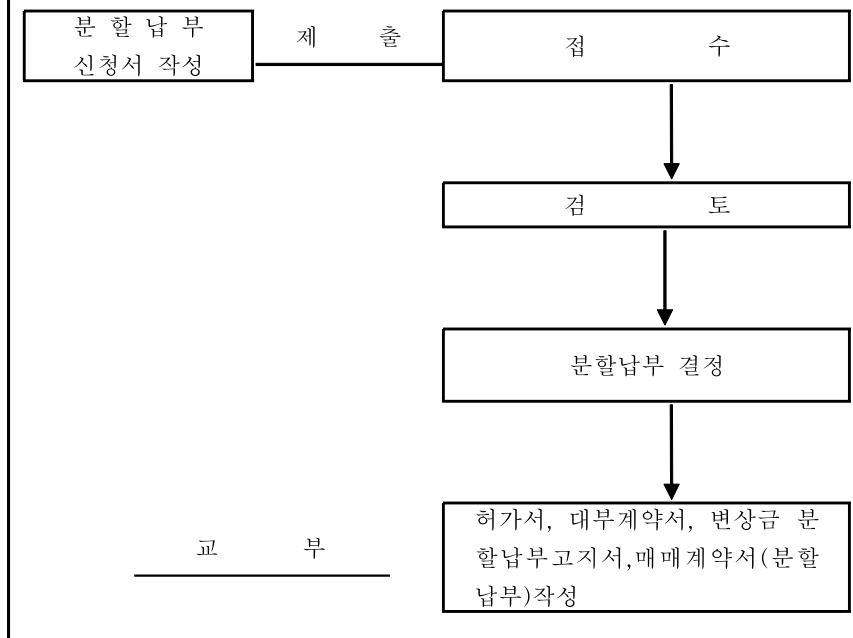
※ 사용료(대부료) :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가능(이자 : 연 6%)

1.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 변 상 금 :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 가능(이자 : 연 6%)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고 양 시 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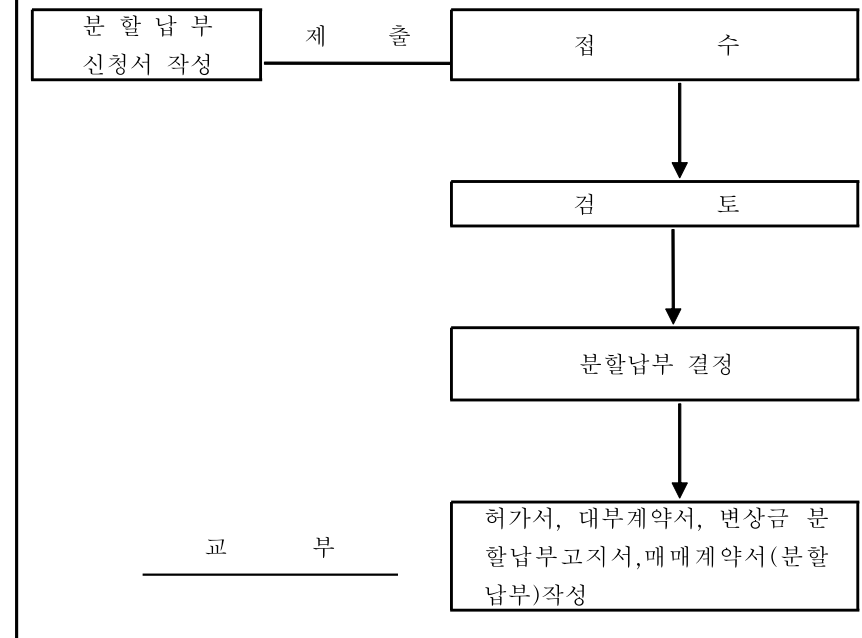
(뒷면)

※ 사용료(대부료) :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가능

※ 변 상 금 :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 가능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고 양 시 청



<신 설>

[별지 제10호의2서식]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 및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내역

부과대상 (부과기간)	점유면적(㎡)	변상금(원)	징수유예기간(월)	유예신청사유

붙임 :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사유에 대한 입증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고양시장 귀하

유 의 사 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

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						
대 상 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부과내용						
재산의 표시			점유 면적 (㎡)	부과기간	예상변상금 (원)	비고
소 재 지	지목	지적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8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 까지 불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고 양 시 장 귀 하

[별지 제14호서식]

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						
대 상 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부과내용						
재산의 표시			점유 면적 (㎡)	부과기간	예상변상금 (원)	비고
소 재 지	지목	지적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8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 까지 불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고 양 시 장 귀 하

[별지 제18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년도 관리계획총괄표(6-1)

회계명 :

(단위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 타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 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삭 제>

[별지 제20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성 명 귀하 고 양 시 장 인

재산의 표시 평가액

재산소재지	지 번	재산종별	총수량	대부수량	평가액	비고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3호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단서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 하여야 한다.
2. 2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시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별지 제20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성 명 귀하 고 양 시 장 인

재산의 표시 평가액

재산소재지	지 번	재산종별	총수량	대부수량	평가액	비고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3호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단서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 하여야 한다.
2. 2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시장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2. 4. 21. 시행)에 따라 관련 용어와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서식을 정비함(제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별지 제6호서식, 제7호서식, 제10호서식 및 제14호서식).
- 나.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신설함(제28조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
- 다. 상위조례 조 삭제에 따른 조문 및 서식을 삭제함(제32조 및 별지 제18호서식).
- 라. 공유재산 매수요구 관련 적용 시행령 조항 변경 및 서식을 정비함(제33조 및 별지 제20호서식).

고양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2년 11월 8일

고양시 훈령 제394호

고양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고양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한다.

② 시 산하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3조(주관부서 등)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청원접수 부서로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

③ 처리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청원심의회 설치 및 심의원칙)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심의회는 청원사항을 공정하고 객

관적으로 심의해야 한다.

제5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실·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시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도시·시설관련 부서 선임 실·국장, 감사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심의회를 개최하는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와 청원 사항과 관련된 자료(청원 조사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청원 자료”라 한다)를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전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들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③ 심의회 위원은 서면회의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심의회 개최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10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처리부서에 청원 자료의 제출 및 심의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처리부서에 보내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청원 사항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제11조(청원 조사 등) ① 처리부서는 법 제18조에 따른 조사가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기관 등의 직원, 청원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문서·자료 등에 대한 감정의 의뢰
- ② 처리부서는 제1항제2호의 경우 조사 일정과 내용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③ 관계 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부서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2조(심의회 결과 처리) ① 주관부서는 심의회 종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3조(수당) 시장은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준수 의무) 심의회 위원은 임기 중 또는 임기 만료 이후에 심의 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는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민원여권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민원여권과장 서 광 진
	팀 장 성 명	시민봉사팀장 김 선 영
	담 당 자 성명 · 전화	강 수 민 (031-8075-2463)

[별지 제2호서식]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안 건	
일 시	년 월 일
검토 의견	

○ 의견서 서명

구분	성명	검토 의견			서명
		찬성	반대	비고	

[별지 제3호서식]

출 석 통 지 서

대 상 자	
출석이유	고양시 청원심의회 참석 (청원명 :)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사정에 의하여 서면의견서로 출석을 대체 하고자 할 때에는 청원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합니다.
고양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0조제2항 따라 위와 같이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 청원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〇 〇 〇 귀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안	건				
일	시	년	월	일	
심의 결과					
심의 의결 내역					
구분	성명	심의 의견			서명
		찬성 (심의결과 동의)	반대 (심의결과 반대)	비고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고양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 제안이유

- 청원법 제7조(청원기관의 장의 의무)에 따라 국민의 청원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고양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청원제도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청원업무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를 규정함(제3조).
- 나.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및 제9조).
- 다. 청원심의회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및 제9조).

고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가로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산64-6번지 일원에 가로공원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8일

고 양 시 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공간시설

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공원	가로공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산64-6 일원	-	증) 9,700	9,700	-	

2)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2	공원	- 신설(공원의 종류 및 면적) - 공원의 종류 : 가로공원 - 면적변경 : 9,700㎡(증 9,700㎡)	고양시의회 공원조성 의견 권고사항을 반영,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 및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가로공원 조성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은 게재 생략하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2. 공고기간 : 2022. 11. 8. ~ 2022. 11. 25.(18일간)
3. 공고대상 : 81나8992등 9대 차량(소유자, 이해관계인)
4.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및 제82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과 특별사법경찰2팀 (☎031-8075-477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10월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1부.

2022. 11. 8.

고양시장

운행정지상태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불법 운행된 사유	등록일
등록	81나8992	메가트럭	김*임	차량 미반납	2022.10.27
등록	80무4436	현대루트제과내장차	김*철	도난 분실	2022.10.19
등록	48너7457	뉴비틀	김*열	차량 분실	2022.10.14
등록	46가6614	트라제XG	고*(주)	법인사업체의 도산	2022.10.13
등록	03무5902	스포티지	(주)캐*터*상	명의이전 미이행	2022.10.13
등록	12모0126	MINI Cooper D five-door	최*선	차량 미반납	2022.10.13
등록	10라7663	BMW 745LI	장*원	차량 분실	2022.10.11
등록	05버1720	GLA220	주식회사 부*글*벌	차량 미반납	2022.10.11
등록	49호1097	E300	(주)금*렌*카	차량 미반납	2022.10.11